

깨끗한 온천, 건강을 지키는 온천, 국민과 함께하는 온천

2015년도 온천종사자교육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
KHS Korea hot Spring Association

목 차

I. 온천법	0
1. 총론	0
2.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	0
3. 온천의 이용 및 보전관리	00
4. 수수료 및 벌칙 등	00
5. 온천전문검사 지침	00
II. 온천운영	00
1. 온천에 대한 이해	00
2. 온천 현황	00
3. 향후 온천의 내실화 방안	00
4. 온천의 의료적 효능 소개	00
5. 행정사항	00
III. 공중위생관리	00
1. 총론	00
2. 공중위생영업 신고	00
3. 공중위생업소 관리	00
4. 과징금 및 과태료처분, 벌칙규정	00

1. 온천법

1. 총론

가. 온천법의 목적 (법 제1조)

- ▶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정의 (법 제2조)

- ▶ 지하로부터 용출(湧出)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제1호)

<영 제2조>

1. 질산성질소(NO₃-N)는 10mg/L 이하일 것
(무기비료, 생활하수, 공장폐수에서 발생)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C₂Cl₄)은 0.01mg/L이하일 것
(유해화학 물질로서 무색의 액체이며 금속세정제에서 발생)
 3. 트리클로로에틸렌(C₂HCl₃)은 0.03mg/L이하일 것
(금속세정제, 드라이클리닝용제, 소화제 등에서 발생)
- 온천우선이용권자(제2호) :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
 - 온천종사자(제3호) :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
 - 온천전문검사기관(제4호) : 온천과 관련한 모든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

다.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법 제23조)

-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내 토지굴착과 온천의 이용에 대한 우선 허가 및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온천개발계획 수립 및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온천우선이용권자 >

- ①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②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리가 이전된 자

☞ 온천지침

【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없을 경우 】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온천개발이 불가능하므로 신속·원활한 온천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온천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자를 “차순위 온천우선이용권자”로 인정하여야 함

라.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법 제7조, 규칙 제4조)

- 법 제7조제2항의 등록기준에 의해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등록
 -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등록기준 증명서류

[참고]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현황 (9개기관)

(2014년 4월 현재)

순번	기관명	소재지	비고
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031)420-3732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전 유성구 과학로 124	042)868-3085
3	(주)한국중앙온천연구소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	02)2027-3470
4	(주)하나 엔지니어링	울산 울주군 온양읍 온양로38-2	031)345-0507
5	(주)한국건설엔지니어링	경기 광명시 범안로 1039	02)894-2472
6	(주)세기종합기술공사	충남 아산시 시민로457번길 11	02-578-5001
7	중앙컨설턴트(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32길 23	02-2156-6031
8	(주)옥수개발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18길 28-1	02-1577-1940
9	(주)진산	제주 제주시 서광로2길 23	064-756-8868

[참고]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온천조사·검사 종류

검사시기	종 류	내 용	관련규정	
굴착허가신청시	온천부존조사	온천자원 부존가능성 확인조사	법12조③ 영13조①-4	
온천발견신고수리시	온천공조사	온천의 수온, 수량, 수질 등	법21조② 규칙13조①② [별표 5]	
	온천공영향조사	인근공에 대한 영향조사	규칙13조②-3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변경·해제시, 온천이용허가시	온천자원평가조사	온천원 보존실태 및 상황변화 온천의 온도, 수질, 성분 (지구내 1일 적정 양수량)	법10조 영7조 규칙5조	개발 계획
			법16조 영17조 규칙10조	이용 허가
이용허가일부 터 5년마다	정기온천자원조사, 성분분석	적정양수량, 수위변동상황, 수질·성분변화 등 온천의 특성 (온천원 1일 적정 양수량) ※ 온천원보호지구는 지구내 모든공 일제조사 실시 주요성분, 온도, 이용에 따른 효과, 주의사항	법24조② 규칙15조① 법19조①	
매 1년마다	수질검사 성분분석 (유황, 유리탄산)	수질 적합여부, 성분함량, 금기증, 주의사항	법19조 규칙12조 [별표4]	

마. 국가 등의 책무 (법 제3조, 법 제3조의2)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천의 발전, 온천문화 창달과 온천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
- ▶ 지방자치단체는 온천발견 신고를 수리한 이후에는 당해 온천의 원활한 개발과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온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이행
- ▶ 안전행정부장관은 온천발전종합계획을 수립·시행, 지자체는 그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이행

■ 기관별 온천정책 추진

○ 중앙

- 온천발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 온천협회 승인 및 지도관리,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 및 지도관리
- 국민보양온천 지정승인, 온천도시의 지정 등
- 온천수의 음용화 추진, 재활용대책 수립

○ 시·도지사

- 온천발전지원 세부계획 수립·이행
- 온천개발계획 승인, 국민보양온천 지정 등
-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및 온천원보호지구 고시, 온천공보호구역 승인

○ 시장·군수·구청장

- 온천발전지원 세부계획 수립·이행
- 온천굴착허가, 동력장치설치허가
- 온천발견신고수리,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온천공보호구역 고시
- 온천개발계획 및 온천원보호지구 신청, 온천이용허가
- 정기온천자원조사(5년마다), 수질 및 성분검사, 출입검사 등

바. 온천협회 (법 제27조, 법 제27조의2, 영 제21조, 규칙 제19조)

- ▶ 온천종사자는 온천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 유지관리 및 온천종사자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하여 온천협회를 설립
- ▶ 협회는 법인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이 인가

○ 설립목적

- 온천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도모
- 온천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회원의 권익향상에 주력
- 합리적 온천 경영체계 확립 및 온천사업의 건전한 운영능력 배양
- 온천에 관한 연구와 온천지식의 보급으로 공공의 복리·건강증진 및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

○ 협회의 사업 등

- 온천의 건전한 발전과 협회 회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 온천이용시설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지도·감독
 -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온천과 관련하여 위탁하는 조사·연구사업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에 이 법에 따른 사업의 위탁으로 사용되는 경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참고]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 설립현황

1. 설립 인가일 : 2007. 7. 11.
2. 사무실소재지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3-1(당주동) 영진빌딩 301호
3. 전 화 번 호 : 02-720-5004 (팩스 : 02-723-5003)
4. 임원구성 : 22명(회장1, 명예회장1, 고문3, 부회장1, 감사1, 이사15)

2.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

가. 온천의 굴착

■ 온천굴착신고 (법 제12조, 영 제13조, 규칙 제7조)

- ▶ 온천수를 솟아나게 할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온천공의 지름을 늘이기 위하여 용출구를 확대하거나 깊이를 깊게 하는 경우 포함
-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 굴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굴착할 토지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를 얻은 자
- ▶ 굴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신청
- ▶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또는 토지굴착 중 온천을 발견한 경우
-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토지의 원상회복 (법 제13조, 영 제14조, 규칙 제7조의2)

- ▶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거나 온천이용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 ▶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안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경우
- ▶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15조의 규정 준용

■ 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제한 (법 제15조, 영 제16조)

- ▶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안에서는 지하수 개발을 할 수 없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가정생활용수로 사용할 경우 예외
 - ※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33조제2호)
- ▶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안에서 건설공사 등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 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온천수의 용출량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될 때에는 온천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5조)

■ 지하수 개발이 가능한 경우

- 공공시설의 업무용, 농업용수 공급용
-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온천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냉탕, 샤워시설 등)
- 1일 양수량 기준으로 30톤 이내로 사용하려는 경우
- ※ 온천지구내 음식점 등 소규모 영업장의 지하수 이용근거를 마련한 것
으로서 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은 가급적 불허가 조치

나. 온천발견 신고 및 취소

■ 온천발견신고 (법 제21조)

- ▶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깊이·온천공의 지름 등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 ※ 벌칙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2조제1호, 제4호)
 - 온천발견 미신고자(법 제12조제4항), 허위신고자(법 제21조제1항)

■ 온천발견신고 수리 (법 제21조, 제22조, 규칙 제13조)

- ▶ 시장·군수는 온천발견신고시 제출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검사결과와 당해 온천이 개발·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고를 수리(受理)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고인이 부담
 - 신고시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

다.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법 제5, 6조, 영 제3, 4, 5조, 규칙 제3조)

- ▶ 시장·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중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할 지역으로서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구역의 범위 3만제곱미터 이내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 온천발견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가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시·도지사에게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또는 지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시·도지사가 승인하면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을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함

라. 온천개발계획

■ 온천개발계획 수립·변경·취소(법 제10조, 영 제7,8,9조, 규칙 제5조)

- ▶ 시장·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그 기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수립을 말한다)을 신청할 수 있음
- ▶ 온천개발계획에는 온천이용시설 및 주변환경의 정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 개발계획의 대상지역이 다른 법령에 의해 지정된 개발지구 안에 있다면 타법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적합하게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 시장·군수 및 온천우선이용권자는 법 제10조 제2항의 각호의 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이에 적합하게 당해 온천개발계획을 조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법 제11조, 규칙 제6조)

- 온천개발면적(제공미터) = 66.2×1 일 적정 양수량(톤)
- ※ 온천개발지역의 토지가 온천개발자의 소유일 경우 10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개발할 수 있음

■ 온천개발계획의 조정 (법 제10조 제2항)

- 주변 여건, 수요 전망 및 개발 방향
- 온천자원의 개발·이용·관리·보호 및 기존 온천원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 개발면적, 토지이용계획, 온천이용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 해당 지역의 조성·정비에 관한 사항
- 폐기물·하수 처리 등 주변환경 정비 및 관광자원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온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타법에 의한 계획에 적합한 개발계획 수립(법 제10,10조의2~4조)

- 온천원보호지구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개발지구로 되어 있는 경우, 동지구에 대한 온천개발계획 수립시 타법에 의한 계획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함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 개발촉진지구의 기본계획
 -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 공원계획
 -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 관광지 등 조성계획·개발계획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 : 산업단지개발계획

■ 온천개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 사항

- 의제처리 대상 : 30개 법률 69개 조항
 - 온천법 제10조의2제1항에 있는 30개 법률 69개 조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에 대하여 미리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신고·결정·승인·지정·인가·면허·협의를 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봄

■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실시

- ▶ 종전에는 온천개발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실시하였으나, 온천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해 개정된 온천법('10.2월 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만 실시

마.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법 제10조의2)

- ▶ 시·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개발계획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여야 함
 - ※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취소 시에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함

바. 동력장치설치의 허가 (법 제14조, 영 제15조, 규칙 제8조, 제8조의2)

- ▶ 온천의 채수를 위하여 동력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설치허가를 받은 동력장치와 동일한 성능의 것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33조제1호)
- ▶ 동력장치의 설치로 인하여 다른 온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력장치 설치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사유를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 ▶ 동력장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동력장치를 설치할 때에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수문관측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4조제1호)

3. 온천의 이용 및 보전관리

가. 온천의 이용허가 (법 제16조, 영 제17조, 규칙 제10조)

- ▶ 공공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이 경우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온천수의 수량은 적정한 양수량을 초과할 수 없음
- ▶ 온천은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 포함)에서 공중의 음용이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및 숙박업에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나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을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이용을 허가할 수 있음
 - ※ 온천을 허가받지 않고 이용할 경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32조제2호)
 - ※ 허가량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3조제3호)
- ▶ 시장·군수는 온천의 이용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온천이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불허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온천과 관련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를 할 수 없으며,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온천표시를 사용할 수 없음

■ 허가의 신청서류

- 온천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온천이용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함
 - 온천의 이용계획서
 -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법 제19조, 규칙 제12조)
 - 온천공 현황(양수시험결과 포함)

-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이용허가 신청자와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 부동산 등기부 등본(목욕용 허가신청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을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만 첨부

■ 허가의 기준

- 온천의 이용허가는 산업용과 난방용보다는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을 위한 허가를 우선하여야 함
- 다만, 온천개발계획에 의하여 온천을 목욕용 또는 음용에 이용하고자도 남는 경우
 -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공중시설
 - 온천원보호지구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음
- ※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 온천법시행규칙 등에 명기되어야 가능함

■ 온천이용이 가능한 산업·공중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 가목에 따른 양어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 사목에 따른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및 같은조 제2호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의 제조시설
-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같은 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일반의약품의 제조시설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골프장, 스키장 및 수영장 시설

■ 온천허가량

- 온천이용허가량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조사한 1일 적정 양수량의 범위 안에서 온천이용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 원칙 :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지정당시 온천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한 1일 적정 양수량의 범위내
 - 예외 : 온천수 이용량의 부족, 개발수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추가 확보한 온천수의 1일 적정 양수량 범위내 가능

나. 일시이용 허가 (영 제17조제4항)

■ 일시이용허가 요건

-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승인을 얻을 때까지 일시적인 이용허가
- 온천우선이용권자이면서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예정지 안에 같은 명의로 준공허가를 받은 목욕장·숙박시설 등 온천이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
- ※ ‘목욕장과 숙박시설’이라 함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과 숙박업에 해당되는 시설과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시설

[참고]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과 숙박시설 정의

-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

[숙박업 제외시설]

-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객실이 7실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산림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 “목욕장업”이라 함은 손님이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

[목욕업 제외시설]

-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부설된 욕실

■ 허가량 및 허가기간

- 이용허가량 기준 :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전 - 1일 적정 양수량의 50%
- 이용허가기간
 -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온천개발계획)에 의한 정식 허가시까지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음
 - 1년의 범위내에서 1회 기간 연장 가능
- ※ 일시이용허가 후 3년 경과시까지 온천원보호지구(구역) 지정 등 개발절차 미이행시 원칙적으로 연장허가 금지

다.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법 제18조)

■ 온천이용허가 취소

- 온천이용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온천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지하수를 섞어서 사용한 때
 - 온천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온천이용의 제한 명령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에 대한 예방 및 온천이용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1년 또는 5년마다 실시하는 수질·성분 검사시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때 3개월 내에 재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판정이 나올 때
- 시장·군수는 온천이용허가 취소 처분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 온천과 관련된 허위 · 과장의 표시 · 광고행위 금지

-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온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온천과 관련된 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를 할 수 없으며, 규칙에서 정하는 온천표시를 사용할 수 없음
- 온천과 관련된 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라 함은 온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을 말함
- 위 조항의 표시·광고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함

1 온천수 공급 배관관리

- 온천이용을 받은 자는 온천수에 지하수를 섞어 사용하면 안되며, 위반시 온천이용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받게 됨
- 온천수 공급배관 파이프라인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 관리가 용이하도록 조치
 - 온천이용시설 신규설치시 온천수 배관라인에는 빨강색, 지하수 배관라인에는 파랑색으로 표시(테이프 피복 가능)
 - 기존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온천수 또는 지하수 공급관로를 따라 2~3미터 간격으로 5cm내외의 테이프로 표시

2 온천이용시설은 온천수 이용에 대한 1일 관리대장 작성·비치

- 온천이용허가량에 의한 사용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온천이용시설에서는 온천공별로 온천수 사용량 등을 작성한 대장 관리

라. 온천의 보전·관리

■ 온천자원의 보전·관리 (법 제24조, 규칙 제15조)

- ▶ 시장·군수는 온천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온천자원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시설의 개선 기타 온천자원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3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26조제2호)
- ▶ 시장·군수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온천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 ▶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는 온천자원조사가 실시될 때까지 새로운 온천에 대한 발견신고를 수리 할 수 없으며 온천이용허가나 이용허가의 연장 등을 할 수 없음

■ 온천자원의 관측·정보체계 구축 (법 제24조의2, 영 제20조)

- ▶ 안전행정부장관은 온천의 계획적·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설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자원 및 수위변동 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함
- ▶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자료 및 그 밖에 온천수 보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온천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 ▶ 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 정보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관계공무원 출입검사 (법 제25조, 규칙 제18조)

- ▶ 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온천시설 및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온천수의 온도·성분·용출량 및 이용상황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온천시설의 관리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할 수 있음
- ▶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법 제19조, 규칙 제12조)

- ▶ 온천종사자(산업용 또는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마다 시장·군수가 행하는 수질검사 및 특이성분(유황, 유리탄산)에 대한 성분검사를 받아야 함(별지 제9호서식)
 - ※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벌금
- ▶ 시장·군수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음
- ▶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의 결과와 온천의 온도, 금기증, 목욕용 또는 음용상의 주의사항을 온천이용시설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
- ▶ 시장·군수는 수질 및 성분검사 결과 온천으로서의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검사 결과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음

※ 검사기관 · 검사주기 · 검사항목

구분	검사기관	검사주기	검사항목
수 질 검 사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행할 수 있으며,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음)	연 1회 이상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주기전에 직권으로 검사를 실시)	인체에의 유해여부 (음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음용적합여부를 포함) 기준 초과여부
성 분 검 사	온천전문검사기관 (시장·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분)	매5년 1회이상(단 유황·유리탄산 성분 연1회 이상)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주기전에 직권으로 검사를 실시)	1. 주요성분 2. 온도 3. 이용에 따른 효과 4. 이용에 있어서의 주의사항

※ 정기자원조사시 성분검사를 동시에 수행

■ 정기온천자원조사 (법 제16조)

- 온천이용의 유효기간은 5년단위로 하며, 5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음
- 이 경우 시장·군수는 제 24조에 따른 온천자원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연장기간을 결정하거나, 허가량을 조정
- 유효기간 1개월 이전에 조사보고서 제출

■ 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법 제17조, 규칙 제11조)

- ▶ 공중의 목욕용으로 제공되는 온천에 대하여는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 목욕용 온천수의 수질검사의 방법 그밖에 수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함
 - 시장·군수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을 공중의 목욕용으로 허가하는 경우 그 수질기준과 검사방법에 대하여는 [별표3]을 적용

☞ 온천목욕장 옥수의 수질기준 (규칙 제11조 관련 별표3)

- 원 수: 총대장균군을 검사하되, 총대장균군은 100ml중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함
- 옥조수: 총대장균군을 검사하되, 1ml중에서 1개를 초과하여 검출되지 않아야 함
-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목욕장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옥수기준을 적용 받지 않고 온천법시행규칙이 정하는 수질기준 적용을 받음

■ 온천의 공동급수 (법 제20조)

- ▶ 시장·군수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급수하게 할 수 있음
- ▶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기타 공동급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4. 수수료 및 벌칙 등

가. 처리기간 및 수수료 (법 제31조, 영 제15조)

○ 수수료 납부방법

- 해당 시·군·구의 수입증지로 납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가능

민 원 명	처리기간	수 수 료	비 고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	30일	없음	
온천발견신고	10일	없음	
토지굴착등(변경) 허가	5일	신규굴착 : 공당 6만원 증 굴 : 공당 3만원	
동력장치설치(변경) 허가	5일	설치 : 개소당 3만원 변경 : 개소당 1만5천원	
지하수개발 허가	5일	시·도조례에서 정한 금액	
수질·성분 검사	5일	시·도조례에서 정한 금액	수탁기관이 정한 수수료
온천이용허가	5일	건당 10만원	

나.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기준 (법 제5조제6항)

■ 처리기준

- 2차 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법정판결 또는 심의 등에 의해 보고서상 허위내용이 확인된 경우 시장·군수는 반드시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함
- 이 기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 7 조 제 3 항 제 1 호	등록취소	
2.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 7 조 제 3 항 제 2 호	등록취소	
3. 법 제 7 조 제 2 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 7 조 제 3 항 제 3 호	등록취소	
4. 정당한 사유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지연하는 경우	법 제 7 조 제 3 항 제 4 호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5. 허위로 검사하거나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법 제 7 조 제 3 항 제 4 호	등록취소	
6.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 7 조 제 4 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 7 조 제 3 항 제 5 호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다. 벌 칙 (법 제32조~36조)

위 반 사 항	벌 칙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없이 토지를 굴착한 자 - 법 제12조제4항의 온천굴착신고를 아니한 자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온천을 이용한 자 - 보양온천 지정을 받지 않고 보양온천 표시를 한 경우 - 허가를 받지 않고 온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 온천 관련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 온천표시를 사용한 자 - 허위로 온천발견신고를 한 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제 3 2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없이 동력장치를 설치한 자 - 온천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안에서 허가없이 지하수를 개발한 자 - 허가받은 수량을 초과하여 온천수를 사용한 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제 3 3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문관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 온천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온천자원의 보존·관리 등에 관한 시장·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 -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의무를 위반한 자 	300만원이하의 벌금	제 3 4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온천원보호지구내 건설공사 등 토지굴착으로 온천수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때 	200만원이하의 벌금	제 3 5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내지 제35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	제 3 6 조

라. 과태료 (법 제37조)

■ 과태료 부과대상

위 반 사 항	벌 칙	비 고
온천이용업소에서 검사결과 및 주의사항 등의 게시 의무를 위반 한 때 (법 제19조제3항)		
시장·군수가 요구한 온천시설 관리자가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25조제1항)	200만원이하 의 과태료	제 37 조
온천종사자교육을 받지 아니한 온천종사자(법 제26조제1항)		

■ 과태료의 부과 · 징수

-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시장·군수가 정한 금액을 부과·징수

5. 온천전문검사 지침

가. 성분검사

- ▶ 온천수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을 분석하고 온천수의 수질 특성을 규명한다.

■ 수소이온농도에 의한 분류

~ 3.0 미만	산성	3.0 ~ 6.0 미만	약산성
6.0 ~ 7.5 미만	중성	7.5 ~ 8.5 미만	약알칼리성
8.5 ~	알칼리성		

■ 주요 이온성분에 의한 형의 구분

- 주요 이온성분(양이온성분 Na, Ca, Mg, K; 음이온성분 Cl, SO₄, HCO₃, CO₃)을 meq/ℓ로 환산한 후, 양이온과 음이온성분 각각을 100%로 비교하여 25%이상인 성분으로 형을 표시한다. 이 때 25%이상인 성분이 두 개 이상일 때 가장 높은 값의 성분을 앞에 놓고 두 번째 성분은 괄호로 묶는다. 예) Na(Ca)-HCO₃(SO₄) 형

■ 광천온천의 분류

- 염화물광천온천 : 총고용물의 양이 1,000mg/ℓ 이상이며, 형의 분류상 Na(Ca)-Cl 형인 경우를 염화물광천온천이라 한다.
- 황산염광천온천 : 총고용물의 양이 1,000mg/ℓ 이상이며, 형의 분류상 Na(Ca)-SO₄ 형인 경우를 황산염광천온천이라 한다.
- 탄산염광천온천 : 총고용물의 양이 1,000mg/ℓ 이상이며, 형의 분류상 Na(Ca)-CO₃ 형인 경우를 탄산염광천온천이라 한다.

■ 미량성분에 의한 분류

-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명칭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때 성분의 기원이 오염이 아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케이싱의 영향 등일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유황온천 : 총고용물량에 관계없이 total S-2 성분함량이 0.1mg/ℓ 이상인 온천을 유황온천이라 한다(이 때 SO₄+2성분은 황산이온성분으로 따로 표시한다). total S-2 성분함량은 S-2, HS-, H₂S로 이루어지며, 대수층의 상태가 환원상태임을 의미한다.
 - 탄산온천 : 탄산가스(CO₂) 성분을 250mg/ℓ 이상 함유한 온천
 - 실리카온천 : 실리카(SiO₂)성분의 함량이 40mg/ℓ 이상인 온천
 - 철온천 : 철(Fe)성분의 함량이 10mg/ℓ 이상인 온천
 - 구리온천 : 구리(Cu)성분의 함량이 1mg/ℓ 이상인 온천

나. 온천전문검사 운영절차

■ 목적

- 온천법령에서 정한 온천전문검사 시행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특)한국 온천협회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온천전문검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조사과정에서의 공신력을 확보함

■ 위탁의 대상

- 온천전문검사 : 온천부존조사, 온천공검사, 온천공영향조사, 온천자원평가조사, 정기온천자원조사, 성분검사 등
- 온천자원의 관측·정보체계 구축 및 수위변동실태 조사 등

■ 위탁운영 체계

- 온천전문검사가 필요한 시장·군수 또는 온천종사자 등이 온천협회에 위탁
- 위탁받은 온천협회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을 선정하여 온천전문검사 의뢰
- 의뢰받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은 온천협회와 약정한 검사 등을 실시하고 약정기일내 검사보고서 작성·제출
- 협회는 학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상이 없을시 위탁을 의뢰한 자에게 검사결과 통보

☞ 온천협회 심의를 통한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 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온천협회(학술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이상이 없을 시 보고서 제출문에 온천전문검사기관 및 온천협회의 직인을 병행 날인하고 학술위원회 검토서를 필히 첨부
- 한국온천협회장의 직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보고서에 대하여는 추후 문제발생시 안전행정부 및 온천협회가 책임을 지지 아니함
 - 공정성과 신뢰성 미흡

■ 위탁계약 체결

- 안전행정부가 정한 온천전문검사의 종류별 품셈표를 적용하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9조(원가계산의 작성 등)에 의함

■ 운영사항의 관리·감독

- 온천협회 및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온천법령 또는 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온천전문검사 위탁 운영사항의 전반에 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직접 관리·감독

■ 온천전문검사 배분원칙

- 연간 계획된 온천전문검사의 총 소요 비용을 기준으로 온천전문검사기관간 적정 배분 수행 원칙
- 온천전문검사기관별 검사 배분의 우선순위는 협의회에서 정한 순서로 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는 안전행정부 등록순서에 의함

■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종류별 우선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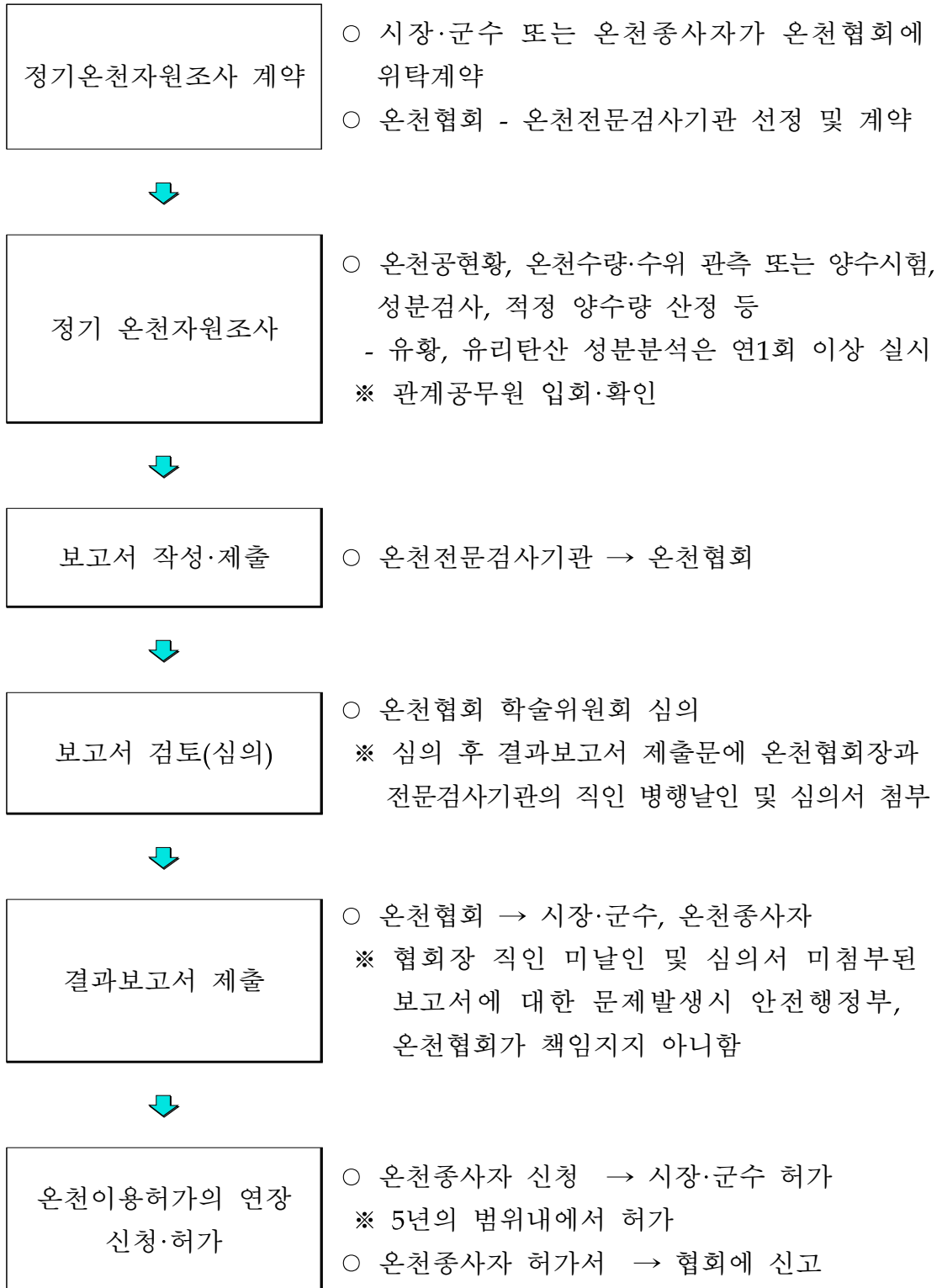
- 정기온천자원조사 : 예정순위의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수행하되, 동일년도의 인접지역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도록 조정
- 성분검사 : 당해 온천공에 대한 정기온천자원조사를 수행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수행

■ 자료의 보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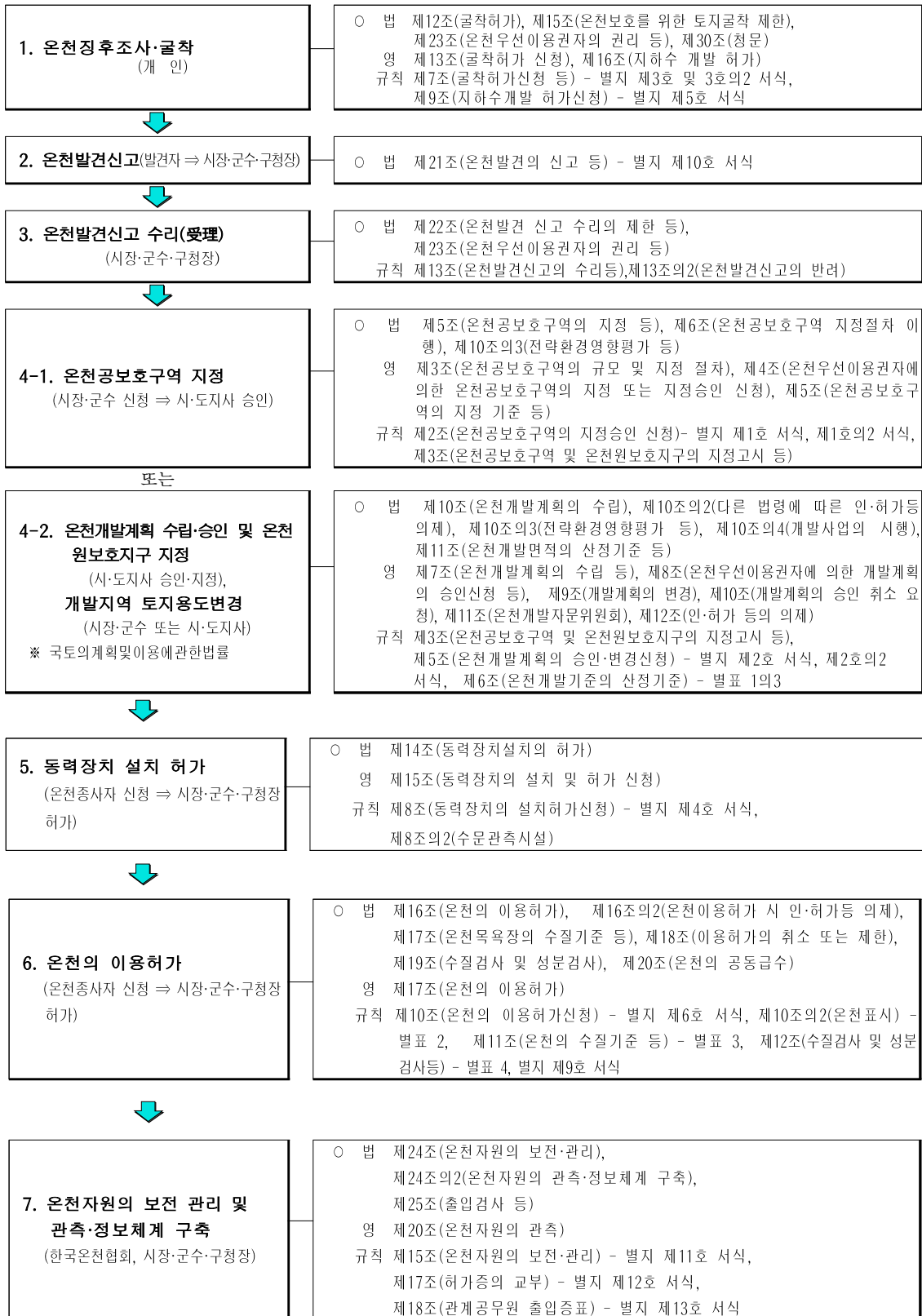
- 온천전문검사보고서 및 각종 조사결과를 기재한 온천전문검사대장을 작성하여 10년 이상 보존
- 온천자원평가조사, 정기온천자원조사 등을 포함한 온천전문검사 결과는 온천자원의 관측·정보체계 구축에 활용

다.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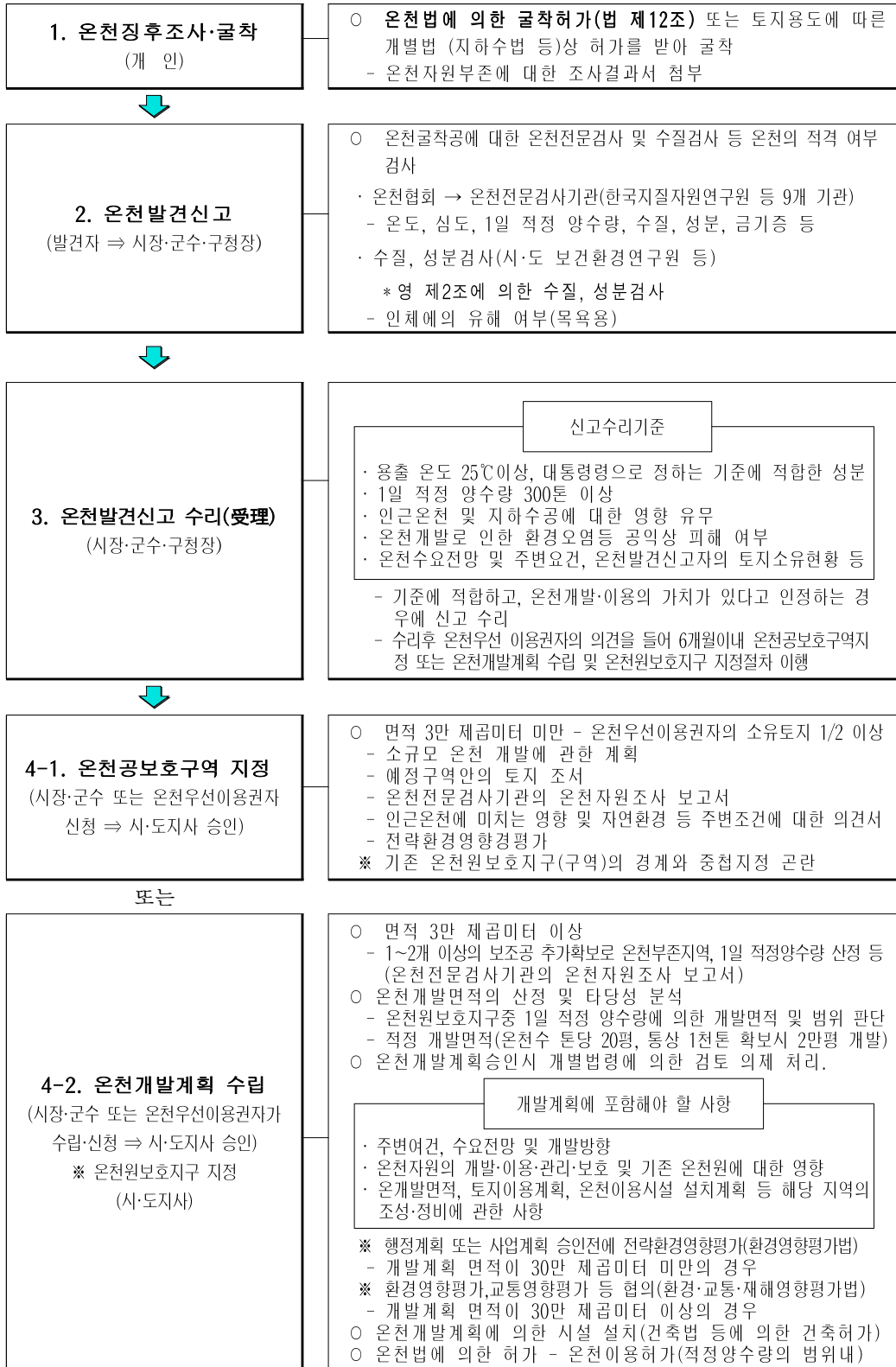
■ 온천전문조사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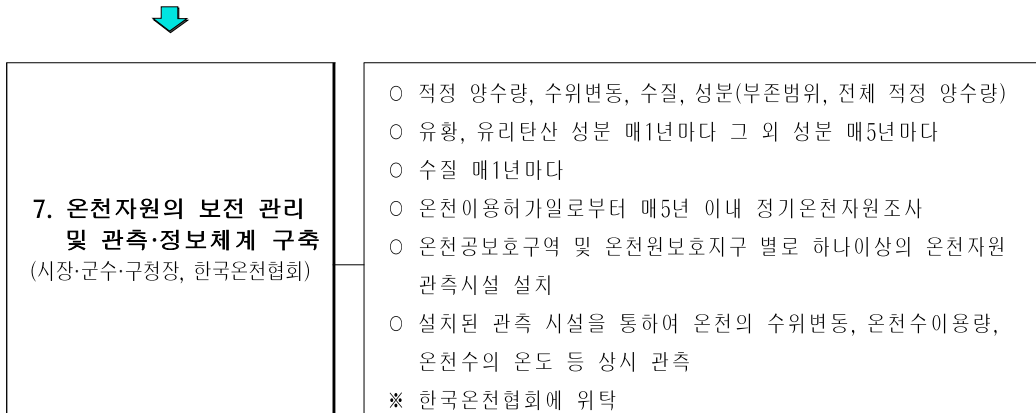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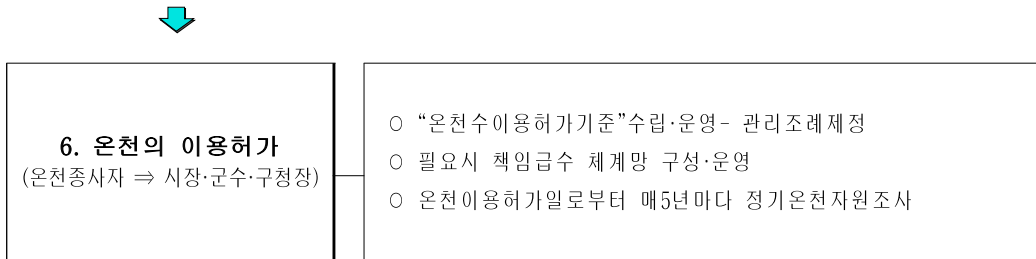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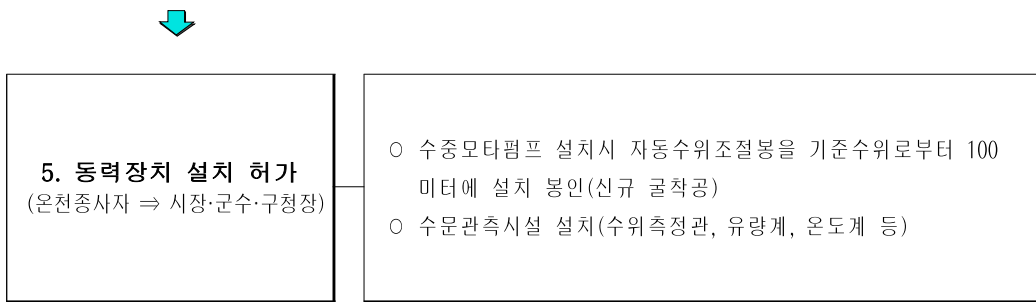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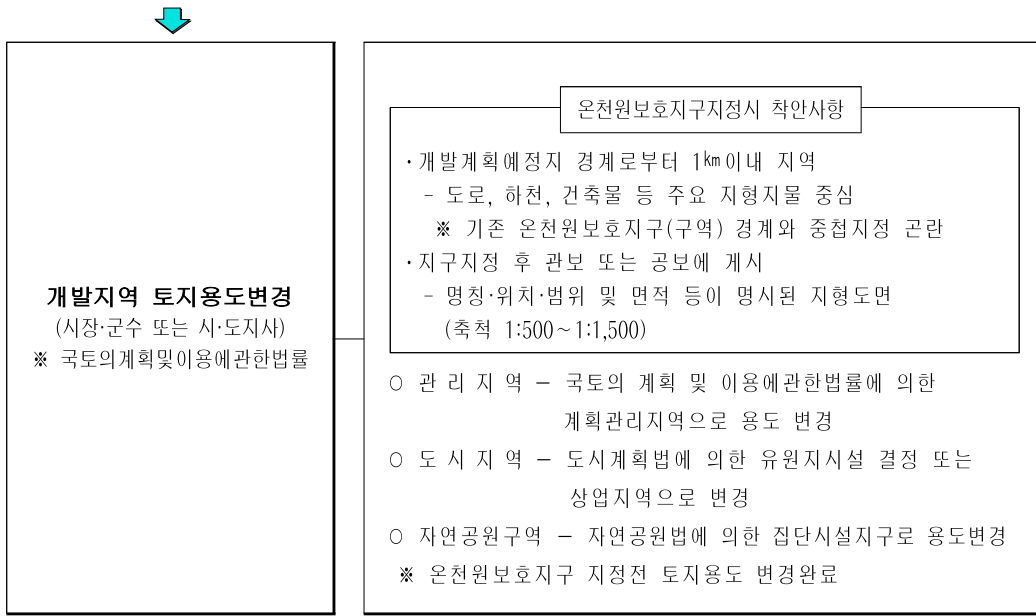


[참고] 온천개발 · 이용 · 관리법규



[참고] 온천개발 · 이용 · 관리절차





6. 안전수칙

가. 안전

■ 정의

- 위험이 없음으로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전한 상태 - 위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고안함으로써 사고를 감소시키는 것
- 인간은 누구나 편안하기를 원하고 만족시키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안전은 생활 중에 일어나기 쉬운 신체적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명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생명의 존엄성을 확보하는 것

■ 안전사고 원인

- ① 인적요인 : 사고의 일차적 원인으로 사고 상황에 이르게 한 인간의 행동
- ② 물적요인 : 각종 물적인 시설에서 오는 요인으로 불안정한 안전장비, 불안정한 기계설계 및 구조, 결함이 있는 비품 등
- ③ 환경적 요인 : 우리 주변의 다양한 환경적 요인으로 불안정한 각종의 물리적·화학적 요인.

■ 안전사고 발생시 마음상태

알고 있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지 않았는가?

- ① 감수성이 둔하다. 위험을 위험하다고 느끼지 못한다. 무심코 하지 않았다.
- 감수성 문제
- ②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만 깜빡 잊거나, 멍청해져서 하지 않았다
- 집중력 문제
- ③ 처음부터 하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 실천하고자 하는 의욕 문제

■ 안전수칙

- 생활 재해나 사고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는 지식 및 기술이 안전수칙이며, 이를 터득하기 위한 교육이 안전교육
- 생활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생애의 전 과정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개인 및 집단의 안전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등을 이해시키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습관을 육성하는 것.
- 위험한 것을 위험하다고 느낄 수 있는 감각. 즉, 위험에 대한 감수성을 날카롭게 함
- 집중력을 높임으로써 깜빡 잊거나, 멍해지거나, 부주의하는 것을 막음
- 위험예방에 대해 '하자, 해보자' 실천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욕을 강화
- 직장의 인간관계나 분위기가 밝아지고, 조직력도 좋아져 명랑한 직장풍토 조성하면 위험예방에 크게 기여함

■ 자문자답 카드

- 온천사에서 과거에 발생 또는 예상되는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3~6개 항목으로 한정하여 자문자답 카드 작성하여 꾸준히 예방활동에 주력
- 자문자답 카드 (예)
 1. 미끄러워 넘어지는 일은 없는가.
 2. 스키거나 베이는 일은 없는가?
 3. 물건이 떨어져서 다치는 일은 없는가 ?
 4. 화상을 입는 일은 없는가?
 5. 눈을 다치는 일은 없는가?
 6. 감전되는 일은 없는가
 7. 요통이 걸리는 일은 없는가?

■ 결론(안전수칙)

- ① 안 전 : 위험하지 않음-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전한 상태
- ② 안전사고 :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사고
- ③ 안전수칙 : 신체의 안전과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정해놓은 규칙
- ④ 안전교육 : 재해나 사고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는 지식, 기술 등을 터득하게하기 위한 교육

나. 수영장의 안전수칙

■ 물놀이 10대 안전수칙(1)

- 수영전에 손, 발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 실시했
- 심장에서 먼 부분 (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 부터 물을 적신 후 물에 들어감
- 수영중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함
※ 이 경우는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119에 신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들지 않음
-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주위의 물건(튜브, 스티로폼, 장대 등)을 이용한 안전구조
-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무모한 구조를 삼가
- 건강이 좋지 않을 때나,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금지
-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 금지
-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으며, 혼자 수영하지 않음
-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위험

■ 물에 들어갈 때 준비 사항

- 수영에 알맞은 수온은 25~26℃
- 준비운동을 한 다음 다리부터 서서히 들어가 고 수온에 적응시켜 수영 시작
- 초보자는 수심이 얇다고 안심해서는 안 됨
 - ※ 물놀이 미끄럼틀에서 내린 후 무릎 정도의 얇은 물인데도 허우적대며 물을 먹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으므로 절대 안전에 유의
- 배 혹은 떠 있는 큰 물체 밑 수영은 위험
 - ※ 숨을 들이쉬 상태에서 부력으로 배 바닥에 눌러 빠져나오기 어려울 때는 숨을 내뿔으면 몸이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에 배 바닥에서 떨어져 나옴
- 통나무 같은 의지물이나 부유구, 튜브 등을 믿고 자신의 능력 이상 깊은 곳으로 수영 금지
 - ※ 의지물을 놓치거나 부유구에 이상이 생길 수 있음
- 수영 중에 "살려 달라"라고 장난하거나 허우적거리는 흥내를 내지 않음
 - ※ 주위의 사람들이 장난으로 오인하여 사고로 이어짐
- 자신의 체력과 능력에 맞게 물놀이 함
 - ※ 물에서 평영 50m는 육상에서 250m를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과 같은 피로
-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입에 문 채로 수영하지 않음.
 - ※ 기도를 막아 질식 위험

■ 어린이 동반 시 유의사항

- 어른이 얇은 물이라고 방심하는 그곳이 가장 위험
- 어린이는 거북이, 오리 등 각종 동물 모양을 하고 보행기처럼 다리를 끼우는 방식의 튜브사용은 뒤집힐 때 스스로 빠져 나오지 못하고 머리가 물속에 잠김

- 보호자와 함께 하는 활동만 안전이 보장되며, 어린이는 짧은 시간 안에 익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
- 어린이와 관련된 수난사고는 어른들의 부주의와 감독 소홀에 의해 발생
- 인지능력과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는 유아와 어린이들은 보호자의 손을 뺀어 즉각 구조가 가능한 위치에서 감독
- 활동반경이 넓어지는 만 6~9세 이하 어린이들은 보호자의 통제권을 벗어나려는 경향을 보이므로 사전 안전교육과 주의를 주어 통제

■ 수영 중 경련이 발생한 경우

- 경련은 물이 차거나 피로한 근육에 일어나기 쉽고, 수영 중 흔히 발생
- 경련이 잘 일어나는 부위는 발가락과 손가락이고 넓적다리 부위에서도 발생하며, 식사 후 빨리 수영을 하였을 때에는 위경련이 발생
- 경련이 일어나면, 몸의 힘을 빼서 편한 자세가 되도록 하고(당황하여 벗어나려고 하면 더 심한 경련이 일어난다.) 경련 부위를 주무른다. 특히 위경련은 위급한 상황이므로 신속히 구급요청

다. 목욕탕의 안전수칙

■ 대중목욕탕

- 목욕탕 바닥은 물기가 있어 굉장히 미끄러움. 작게는 찰과상, 골절, 심하면 뇌진탕 우려되므로 조심하여 보행
- 목욕탕 바닥에는 비누나 음료수 뚜껑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바닥을 잘 살피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
- 샤워기를 틀었을 때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와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사람을 향해 샤워기를 틀면 안됨
- 한증막에 오래있으면 탈수증상이 생기거나 몸의 상태에 따라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짧게 이용

- 탕에 들어갈 때는 천천히 들어가고, 탕 속에서 장난치면 안됨
 - 탕이 넓다고 해서 다이빙을 하거나 뛰어들면 위험. 목욕탕 내는 거의 딱딱한 재질로 되어있어 부딪히면 크게 다칠 수 있음.
- 샤워기를 틀 때는 물을 대야에 받아서 온도를 확인하고 사용

■ 욕실

- 욕실에서 사용하는 전기제품(헤어드라이어, 고데기 등)은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제거. 전기쇼크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센트에는 안전덮개 및 누전방지 장치
- 어린이들이 욕조나 세면대에 빠져 질식할 수 있으므로 감독 철저. 뜨거운 물에 의한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화상방지용 수도꼭지를 설치
- 욕실에 있는 화장품이나 비누, 샴푸는 아이들이 먹을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고 욕실 캐비닛에 잠금장치
- 사용 중이 아닌 좌변기 뚜껑은 항상 내려놓고 화장실 문은 닫음.
- 약품은 화장실에 두지 말고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 욕실바닥이 미끄러우므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
- 미끄럼방지용 바닥재를 깔아 사고를 예방
- 욕실에 설치되는 거울이나 유리제품은 안전유리나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

■ 찜질욕

- 1회 20~30분으로, 20분 찜질 후 10분간 휴식. 고온 찜질욕은 1회 15분 이내
- 찜질욕 후 갑자기 찬바람을 쐬거나 냉수를 끼얹는 행동은 회피
- 30분마다 수분을 보충하며 찬 음료는 피함
- 고위험군은 금지
 - 심혈관계 환자 : 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이 심했던 환자, 중증도의 대동맥

관 협착증, 심부전증 환자, 부정맥 병력의 환자 등

- 만성질환자 : 고혈압, 기립성 저혈압 , 당뇨병 , 갑상선기능 항진증 등
- 안면 홍조증이나 하지 정맥류 등 실핏줄이 드러나는 혈관 확장증
- 피부건조증,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 노인, 음주자 등
- 어린이는 물기 많은 목욕탕에서 뛰거나 장난을 치지 않도록 하며 어른과 함께 함
- 무리한 찜질욕으로 의식을 잃거나 몸에 열이 치솟을 경우에는 즉시 서늘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으로 이동하여 서서히 몸을 식히면서 물을 먹도록 함.
- 헬스시설을 이용 후 바로 찜질방이나 사우나로 들어가지 않도록 함

II. 온천운영

1. 온천에 대한 이해

가. 온천의 정의

<온천법 제2조>

- “온천”이란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온천법시행령 제2조>

- 다음 각 호의 성분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
 1. 질산성질소(NO₃-N)는 10mg/L 이하일 것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C₂Cl₄)은 0.01mg/L 이하일 것
 3. 트리클로로에틸렌(C₂HCl₃)은 0.03mg/L 이하일 것

▲ 세계 각국의 온천수의 온도 기준

- | | |
|--|--------------|
| ① 프랑스 | 35℃ 이상 |
| ② 헝가리, 대만 | 30℃ 이상 |
| 대만은 함유성분의 총 용중성 고형물질(T.D.S) 500mg/ℓ 이상 | |
| ③ 일본, 남아프리카 | 25℃ 이상 |
| ④ 미국 | 21℃(70°F) 이상 |
| ⑤ 독일, 이탈리아, 영국 | 20℃ 이상 |

세계 온천이용국 중에서 유일하게 온천의 정의를 온도와 동시에 일정량 이상의 온천수에 광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야 온천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는 대만이며, 독일과 일본은 온천수의 온도의 정의 규정에 관계없이 별도로 온천수에 일정량 이상의 광물질을 함유하고 있을 때 온천(광천) 또는 요양천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헝가리는 온천수 중에 1000mg/1ℓ의 광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또한 의학적으로 과학적인 치료효과가 입증되었을 때 별도로 치유수(治癒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나. 우리나라 온천의 유래

■ 온천에 대한 기록

고문헌에 수록되어 있는 온천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면 개설(概說 :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함)로 기록하고 있는 문헌이 9개이고 온천지로서 위치와 효능 등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지명은 154개 지역으로서 계 163개 내용이 29개의 각종 고문헌에 수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들 선조들께서는 온천을 귀중한 자원으로 취급하고 왕께서 직접 병치료에 활용하고 국가적으로 관리 운영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설 중 3가지만 예를 들면

- 고려사 - 고려 선종 때 병든 부모님께 온천욕을 시키고자 하는 관리에게 휴가제를 실시
- 경국대전 및 대전회통 - 온천이 있는 곳의 수령은 온천의 욕장을 수리하여 병인을 구호하여야 함
- 조선왕조실록 - 경기지방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현직자에게 3계급 특진하고 직 위가 없는 자에게는 7등급에 임명하였고 천인은 입역을 면제하였다는 기록

▲ 세계 주요 국가들의 사례

국 별	온 천 이 용 사 례
독 일	- 1826년 육군 광천(鑛泉)병원을 설립, 온천수 이용 - 1870년 보불전쟁 때 윌헤름요원(療院)에서 부상장병 온천치료 - 종합온천보양관인 쿠르하우스(kurhaus) 지정운영
이탈 리아	- 2차세계대전 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온천을 정부 직할에 두고 온천지 정비, 온천요법의 의학적 연구 진행
프랑 스	- 1856년 광천보호법 제정 - 온천치료에 의료보험 적용 후 약물비 30% 감소
일 본	- 유럽에 시찰단 파견, 1923~25년 이주와 벳부에 온천요양소 설치 - 1954년 보양온천지제도 도입하여 현재 86개 보양온천지 운영

<독일>

독일에는 온천요법과 온천 니욕요법(泥浴療法)을 주로하는 온천지는 135개소가 있으며 온천요법의 주된 목적은 첫째 예방의학의 면에서 건강만들기의 방법을 실천, 교육하고, 둘째 리허빌리테이션(사회복귀 치료요법)의료를 행하고, 셋째 만성질환의 조기회복을 도모하는 것에 있다.

독일에는 휴양, 보양을 목적으로 하는 쿠르하우스(Kurhaus : 온천보양관)와 온천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온천치료관(Kurmittelhaus)이 있다. Kur는 영어의 Cure와 동의어(同義語)라고 할 수 있다.

구르밋델하우스는 온천전문의(專問醫)의 처방에 의거 치료받는 시설로서, 온천욕조와 온천욕실, 니욕실(泥浴室)¹⁾, 흡입치료실, 마사지(massage)실, 전기치료실, 사우나, 증기욕실, 제트욕, 각종 운동실, 옥내외 풀 등의 시설이 집중적으로 정비되어 있는 치료활동의 장소이다.

세계 각국은 온천의 효능을 높이기 위하여 개발하여 이용하고 있는 욕조시설은 40여 종류가 있고, 입욕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기능별로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온천 현황

가. 기본현황 - '14년 12월말 기준

< 지구 및 이용인원 >

- 온천지구
 - 442개 지구(온천원보호지구 138, 온천공보호구역 196, 신고수리 108)
 - 이용중 : 211 지구, 개발중 : 123지구
- 연간 이용인원 : 61,688천명

< 평균 온도 및 심도 >

- 온천수 온도 : 최하 법정 25℃ ~ 78℃(전국 평균 30.3℃)
- 굴착 심도 : 최저 70m ~ 최고 2,003m(전국 평균 705m)

나. 우리나라 온천의 이용환경

■ 여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이용객 증감

- 국민관광여건 개선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관광 및 웰빙 수요 증가에 편승하여 전반적으로 온천이용객수 증가 경향
 - 온천대축제 행사 개최 등 온천산업 활성화 추진 영향
- 기존의 전통온천지, 소규모 온천들은 시설 노후화, 영세화로 이용객 수 점차 감소

■ 온천시설의 현대화에 따른 여건변화

- 물놀이 시설, 숙박시설, 편의시설 등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유원 시설형태의 다양한 기능을 갖춘 대규모 엔터테인먼트 시설의 등장으로 기존 시설과 신규 시설간의 양극화
- 찜질방·워터파크 등 경쟁업종의 대량출현과 일반 목욕탕의 시설 현대화로 차별화된 시설·서비스 공급체제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존 온천업소의 폐업실태 증가

■ 무분별한 온천 난개발

- 지가 상승을 기대한 무분별한 토지굴착후 자금부족, 타법상 규제 등에 의한 장기방치로 지하수 오염 및 국토난개발 초래
- 일부 지자체 및 사업가의 개발의지 부족으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온천지로서의 특성과 정취를 살린 종합적 관광여건 조성에 한계

다. 온천에 대한 국민 인식

- 이용목적 → 휴식 및 목욕
- 온천결정 고려요인 →고령층은 보양, 저령층은 휴양(시설, 교통)위주
- 효능 인식 → 성분별 효능을 의학적으로 검증, 온천별 함유성분을 홍보
- 일반목욕 대비 온천 매력포인트 → 성분과 온도
- 온천시설과 일반목욕시설 구분 방법 → 간판, 상호 모호
 - 온천만이 사용할 수 있는 로고의 적극 홍보
- 온천시설 투자시 구비시설 순서 → 노천탕, 찜질, 치료, 물놀이

라. 주요 개선사항

■ 온천수요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및 홍보추진

- 국가, 지자체의 온천산업 활성화 책무이행(온천법 제3조, 제3조의2, 제9조, 제9조의2)
-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개최 : 안행부, 지자체, 국민일보, 관광공사, 협회, 학회 공동 협력식
- 온천이용 홍보 추진
 - 아름다운 온천책자 발간, 온천 홍보포스터 제작·배부, 일간지 광고 게재
- 의료적 효능 연구 : 보양온천 도입, 온천의 의료적 효능연구, 온천의 우수성 보고서

■ 온천자원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 국민보양온천 제도 도입·운영 - 온천법시행규칙 개정('08.3.24)
- 온천발견신고 제한 : 직선거리 1,000m
- 동일 온천원에서의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제한

■ 온천산업 경쟁력 강화 - 온천발전전략과제 연구 추진

- 온천수 음용화 방안, 온천치료 건강보험제도 도입방안, 온천수 열에너지 활용방안, 온천도시 조성방안 등

3. 금기증, 적응증 및 이용상의 주의사항

가. 개요

- 용어정의
 - 금기증(온천이용이 특정인에게 나쁜 영향이 있는 경우 금하는 내용)
 - 적응증(온천요법에 적응되어 효과를 나타내는 질환 또는 증후)
 - 일본이 1982년에 온천법에 의거 제정 시행하고 있는 내용들이며, 일본은 32년 동안 시행해 온 내용을 최신의 온천 의학적 지식과 세계의 온천관계 연구 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과학적인 근거 하에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2014년에 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새롭게 소상하게 작성 고시한 내용을 소개함
- ※ 작성자 : 국제온천기후연합 부회장 조경도(온천협회 고문)

나. 금기증

- 온천의 일반적 금기증(육용)

병의 활동기(특히 열이 있을 때), 활동성의 결핵, 진행한 악성종양 또는 고도의 빈혈 등 신체쇠약이 현저한 경우, 조금 움직여도 숨이 차는 무거운 심장 또는 폐의 병, 부종이 있는 것 같은 무거운 신장의 병, 소화관출혈, 눈에 보이는 출혈이 있을 때, 만성외 병의 급성증오기

- 천질별 금기증

게시용천질	육 용	음 용
산 성 천	피부/점막이 과민한 사람, 고령자의 피부건조증	-
유 황 천	산성천과 같음	-

○ 함유성분별 금기증

성 분	육 용	음 용
나트륨이온을 함유한 온천을 1일 (1,200/A×1,000)ml의 범위를 벗어나서 음용하는 경우	-	염분 제한이 필요한 병태(신부전, 심부전, 간경변, 허혈성 심질환, 고혈압 등)
칼륨이온을 함유한 온천을 1일 (900/A×1,000)ml의 범위를 초과해서 음용하는 경우	-	칼륨 제한이 필요한 병태(신부전, 부신피질기능 저하증)
마그네슘이온을 함유한 온천을 1일(300/A×1,000)ml의 범위를 초과해서 음용하는 경우	-	설사, 신부전
요오드화물이온을 함유한 온천을 1일(0.1/A×1,000)ml의 범위를 초과해서 음용하는 경우	-	갑상선기능 항진증
상기 중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	해당되는 모든 것이 금기증

(주)

- A는 온천 1kg 중에 함유되어 있는 각 성분의 중량(mg)을 가리키며, 음용하는 온천에 대하여 함유하고 있는 성분마다 각기의 중량에 의거하여 구체적 수치를 기재할 것. 입욕 및 음용상의 주의의 게시의 기준 중 음용의 방법 및 주의에 있어서 「온천음용의 1일의 양은 200~500ml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구체적 수치가 500ml이상의 경우는 온천의 1일 음용량을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금기증에 게시할 필요가 없음

(예) 나트륨이온 3,000mg/kg, 칼륨이온 200mg/kg, 마그네슘이온 60mg/kg, 옥소이온 1mg/kg를 함유하고 있는 온천을 음용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게시

- 100mg 보다 더 많이 음용할 경우 : 갑상선기능항진증
- 400mg 보다 더 많이 음용할 경우 : 염분(소금) 제한의 필요한 병태
(신부전, 심부전, 간경변, 허혈성 심질환, 고혈압 등)
(이 경우, 칼륨이온에 대해서는 1일 4,500ml, 마그네슘이온에 대해서는 1일 5,000ml가 되기 때문에 온천의 1일의 음용량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금기중이지만 게시할 필요는 없다)

다. 적응증

- 온천요양의 효용은, 온천의 함유성분 등의 화학적인자, 온열 그밖에 물리적 인자, 온천지의 지세 및 기후, 이용자의 생활리듬의 변화,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어나는 총합작용에 의한 심리 반응 등을 포함한 생체반응에 있다는 것
- 온천요양은 특정의 병을 치유하기보다는, 요양을 행하는 사람이 가지는 증상, 고통을 경감하고, 건강의 회복, 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써 전체적 개선효용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 온천요양은 단기간으로도 정신적인 리프레시(원기회복) 등 상응의 효용을 얻을 수 있지만, 충분한 효용을 얻기 위해서는 통상 2~3주간의 요양기간이 적당하다는 것.
- 적응증이라해도, 그 질병 중 또는 요양을 행하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온천요양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의사에 의한 약물, 운동과 휴양, 수면, 식사 등을 포함 지시, 지도하에 행하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종래부터 적응증에 대해서는 그 효용은 총합(종합) 작용에 의한 심리적 반응 등을 포함한 생체 반응에 의하는 것으로, 온천의 성분만으로 각 온천의 효용을 확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등으로 그 게시내용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전문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하고 있다.

■ 적응증의 게시 기준

○ 요양천의 일반적 적응증(육용)

<p>근육 또는 관절의 만성적인 아픔 또는 굳어짐(관절류머티즘, 변형성 관절증, 요통증, 신경통, 견비통 [50세 전후해서 생기는 어깨의 신경통] 타박상, 염좌[관절의 뺨] 등의 만성기)</p> <p>운동마비에 있어서의 근육의 굳어짐, 냉증, 말초순환장애, 위장기능의 저하(먹은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않고 위에 남고, 장에 가스가 쌓이는 등), 경증고혈압, 내당능 이상(당뇨병), 가벼운 콜레스테롤 혈증, 가벼운 천식 또는 폐기종, 치질의 아픔, 자율신경불안정증, 스트레스에 의한 체증상(수면장애, 우울상태 등) 병후회복기, 피로회복, 건강증진</p>

○ 천질별 적응증

게시용천질	육 용	음 용
단순온천	자율신경불안정증, 불면증, 우울상태	—
염화물천	칼에 베인 상처, 말초순환장애, 냉증, 우울상태, 피부건조증	위축(萎縮)성위염, 변비
탄산수소염천	칼에 베인 상처, 말초순환장애, 냉증, 피부건조증	위십이지장궤양, 역류성 식도염, 내당능이상(당뇨병, 고노산혈증(통풍))
황산염천	염화물천과 같음	담도계 기능장애, 고콜레스테롤혈증, 변비
이산화탄소천	칼에 베인 상처, 말초순환장애, 냉증, 자율신경불안정증	위장기능저하
함철천	—	철 결핍성빈혈
산성천	아토피성피부염, 심상성(尋常性)건선, 내당능이상(당뇨병) 표피화농증	—
함옥소(요오드)천	—	고콜레스테롤혈증

유황천	아토피성피부염, 심상성건선, 만성습진, 표피화농증(황화수소형에 대하여는, 말초순환장애를 보태다)	내당능이상(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방사능천	고뇨산혈증(통풍), 관절류머티즘, 강직성 척추염 등	—
상기중 둘이상에 해당될 경우	해당되는 모든 적응증	해당되는 모든 적응증

(주)

① 요양천의 일반적적응증과 천질별적응증에 대하여 중복이 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천질별 적응증의 게시를 우선으로 하고 중복하는 경우에는 일반적 적응증을 제외해도 좋음

② 광천분석지침(헤이세이 26년[2014년] 개정판)에 (※)표시하고 있는 요양천의 천질의 분류가 둘 이상에 해당될 경우에 있어서의 적응증은 「해당되는 모든 적응증」으로 하고 있으나, 게시에 있어서는 중복하여 게시하지 않는 것으로 함

(예) 함이산화탄소-나트륨-염화물천의 경우는, [염화물천]과 [이산화탄소를 함유한 요양천]에 해당하기 때문에 욕용의 적응증으로서 칼에 베인 상처, 말초순환장애 및 냉증은 중복하여 게시하지 않음

○ 기준의 적용대상

- 상기 다의 기준은, 온천을 공공의 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하는 숙박시설, 공중욕장 등의 이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그 외에 의료기관이 치료행위의 일환으로서 온천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요양천의 일반적 적응증 및 천질별 적응증 외에 전통적 적응증을 적응증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의사의 의견을 참고로 하는 것도 바람직함

라. 입욕 또는 음용상의 주의의 게시 기준

■ 욕용의 방법 및 주의

<p>입욕전의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식사의 직전, 직후 및 음주후의 입욕은 피할 것, 명정(酩酊 : 정신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함) 상태의 입욕은 특히 피할 것. ② 과도의 피로시에는 신체(身體)를 쉬게 할 것. ③ 운동후 30분 정도 사이는 신체를 쉬게 할 것. ④ 고령자, 어린이 및 신체의 부자유한 사람은, 혼자만의 입욕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손발부터 탕물을 끼어 엮어 온도에 길들임과 동시에, 신체를 씻어 내리게 한다. ⑥ 입욕, 특히 기상 직후의 입욕 등에는 탈수증상 등이 되지 않도록, 입욕전 한 컵 정도의 수분을 보급해 놓을 것.
<p>입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입욕온도 : 고령자, 고혈압증, 그렇지 않으면 심장병의 사람, 또는 뇌졸중을 경험한 사람은, 42℃ 이상의 고온욕은 피할 것. ② 입욕형태 : 심폐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은, 전신욕보다는 반신욕 또는 부분욕이 바람직하다. ③ 입욕회수 : 입욕개시 후 수일간은 하루 1~2회로 하고 몸에 길들여지면 2~3회로 늘려나가는 것이 좋다. ④ 입욕시간 : 입욕온도에 따라 다르지만, 1회당 처음에는 3~10분 정도로 하고, 신체에 길들여지면 15~20분 정도까지 연장해도 좋다.
<p>입욕중의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운동욕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수족을 가볍게 움직일 정도로 하여 조용히 입욕할 것. ② 욕조에서 나올 때는, 현기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천천히 나올 것. ③ 현기증이 생기거나, 또는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욕조로부터 천천히 나와, 몸을 옆으로(누운자세) 하고 회복을 기다린다.

입욕후의 주의	<p>① 신체에 부착되어 있는 온천성분을 씻어 흘려보내지 말고, 타월(수건)로 수분을 닦고, 의복을 입은 후, 보온 및 30분 정도의 안정을 권유한다.(단, 피부가 약한 사람은 자극이 강한 천질에는, 온천성분을 온수로 씻어 흘려보내는 방법이 좋다)</p> <p>② 탈수증상 등을 피하기 위하여 한 컵 정도의 수분을 보급(보충)할 것</p>
욕탕탈 (목욕탈)	<p>온천 요양개시 후 대체로 3일~일주간 전후에, 기분불쾌, 불면 혹은 소화기증상(症狀) 등의 욕탕탈 증상 또는 피부염 등이 나타날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상태가 나타날 동안에는, 입욕을 중지하든지, 또는 회수를 줄여서 이와 같은 상태에서 회복을 기다린다.</p>
기 타	<p>욕조수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욕조에는 타월(수건)을 가지고 들어가지 말것.</p>

■ 음용의 방법 및 주의

온천은 용출후, 시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변화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중으로부터 용출된 직후의 신선한 온천이 가장 좋은 효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각각의 천질에 잘맞는 사용방법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신체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온천의 음용은, 아래 내용을 지키면서 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천을 음용에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자 등은 신선한 온천을 이용함과 동시에, 원천 및 음천시설에 대하여 충분한 공중위생상의 배려도 행할 필요가 있다.

- ① 음천요양에 있어서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의사의 지도를 받을 것. 또한, 복약(藥) 치료 중인 사람은 주치의(主治醫)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음천을 결정한 장소에서, 원천을 직접 끌어온 신선한 온천을 음용할 것.
- ③ 온천음용의 1회의 양은 일반적으로 100~150ml 정도로 하고, 1일의 음용 총량은 약 200~500ml까지로 할 것
- ④ 15세 이하의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음용은 피한다. 단,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의사의 지도를 받는 음천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⑤ 음천에는, 자신의 전용이나 쓰고 버리는(일회용) 컵 등 위생적인 것을 사용한다.
- ⑥ 음천은 일반적으로 식사 30분 전에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⑦ 음천장으로부터 음용목적으로 온천수를 가지고 가지 말 것.
- ⑧ 음용을 할 때 오연(誤嚥)에 주의할 것.

(주)

- (1) 온천에 비소, 동, 불소, 연(납) 및 수은과 유리탄산을 함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 기재에 더하여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 음용량을 표시할 수 있다.
- (2) 온천이 PH 3 미만인 경우(회석을 하여 음용에 이용하는 온천이 PH 3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는 이 기재에 대신하여, 「이 온천의 액성(液性)은 산성이기 때문에, 샘수로 10배 희석한 후 음용의 1회의 양은 100ml까지로 하고, 그것의 1일의 총량을 약 200~500ml까지로 한다」라고 할 수 있다.
- (3) 오연(誤嚥)이란 물을 삼킬 때나 목이 말라 물을 마실 때 폐나 기관이 물을 흡입해 벌이는 것을 말함. 그 위에 연하(嚥下 : 음식물이 입에서 목구멍을 거쳐 식도를 지나 위의 분문[噴門]에 이르는 것) 장애의 발증이 있는 사람은 음천을 삼가할 것.

4. 입욕프로그램의 종류

가. 개요

- 보양 요양을 목적으로 한 온천욕시 온천의 물리적작용에 대하여 몸의 반응준비상태가 그 효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탕온에 따라 이용시설의 입욕시간, 입욕회수 등 이용자의 체질에 맞추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욕조의 종류에 따라 건강만들기의 효과를 높이는데 각각 그 기능을 달리하고 있다.
- 다음은 일본의 일본 온천기후 물리의학회와 일본건강개발재단이 연구 결과 작성한 입욕 프로그램에 따라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욕조의 종류를 소개하고자 한다.

※ 작성자 : 국제온천기후연합 부회장 조경도

나. 욕조의 종류

① 뒤집어쓰는 탕

- 입욕초기에 머리에 탕을 뒤집어쓰면 혈관이 확장함으로써 혈압상승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온욕반응(溫浴反應)에 대한 신체에 준비를 주기위하여 두 종류의 수온고(42℃) 중 (40℃ 미만)의 온천수로서 하복부(下腹部), 흉부(胸部), 머리, 순으로 대야로서 평균 5~10대야(杯) 정도를 몸에 살포할 수 있게 하는 탕을 말한다. 욕조의 청결(清潔)유지에도 효과가 있다.



② 전신욕, 반신욕

- 전신욕(깊이 60cm정도)와 반신욕(깊이 30~40cm)는 하나의 욕조 안에 설치하며, 전신욕은 탕의 온도를 40~42℃로써 인체의 발한(發汗)작용을 촉진 물질대사(物質代謝)를 높이고 피로를 없앤다. 반신욕은 온도나 수압에 의한 심장에 대한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가슴이하의 몸의 하반신을 따뜻하게 하는 입욕법으로서 허약자, 고령자, 심장병, 고혈압의 사람에게 적합하다. 위장이 약한 자, 담석, 월경통, 요통, 불면증에 좋은 입욕법이라고 한다. 전신욕과 반신욕은 순환기, 소화기, 신경계 등의 기능을 높인다. 적정온도의 유지에 신경을 써야한다. 온천수 속에 일반물을 혼입해서는 안된다. 42℃이상의 고온일 때에는 심장병, 고혈압 자는 삼가는 것이 좋다.

③ 침탕(寢湯)

- 38℃ 전후의 온천수로서 얇은 욕조 내에 다리를 뻗고 가슴을 천정을 보게 누워서 느긋한 기분을 낼 수 있고, 비교적 장시간의 이용을 생각한 것이며 정수압(靜水壓)의 영향 및 온열에 의한 자극을 완화함으로써 심폐(心肺)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고, 온천수의 효능을 신체에 주게 하는 욕조로서 진정, 진통, 최면(催眠)의 효과가 있다. 피부의 혈관을 확장하게 하고 혈액과 임파액의 흐름이 좋아진다.



- 동맥경화, 고혈압증 또는 정신피로, 불면증의 사람에게 좋은 입욕법이다. 얇고 넓은 욕조이므로 탕온의 균일성의 유지, 물의 부력에 대한 안정성 유지, 비교적 장시간의 이용이므로 시야(視野)확보 등 신경을 써야 한다.

④ 기포욕(氣泡浴), 포말욕(泡沫浴)

- 욕조에 기포발생장치를 설치 탕온을 38℃ 전후로 하고 5~10분 정도로 비교적 길게 입욕한다.

- 적은 포가 몸에 부닥칠 때 초음파를 발진, 몸의 조직에 압축과 이완의 기계적 자극을 주어 온열효과를 높인다.

- 미용효과, 어깨통, 요통, 근육통, 관절통, 피로회복, 피부병, 외상(外傷)후유증 등에 효과가 있다. 그러나 폐결핵, 임신, 고도의 동맥경화증, 심장이 좋지 않은 사람의 입욕은 삼가하는 것이 좋다.



⑤ 맞는 탕(폭포탕: 瀑布湯)

- 높은 곳에서 탕을 낙하시켜 온열효과와 같이 마사지 효과를 기대하며 탕물이 몸에 닿는 순간에 물방울이 분산하면서 주변에 마이너스(음: 陰)공기이온이 발생하며 진정효과가 있다. 비만, 요통, 어깨통에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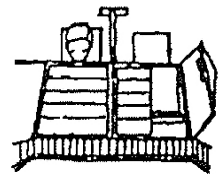
⑥ 압주탕(壓注湯)

- 욕조에 압주장치를 설치하여 어깨, 허리, 다리, 발바닥에 38℃ 전후의 탕을 맞는다. 온천수의 동소압(動小壓)을 이용한 온열과 압력의 자극에 의한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신경통, 요통, 타박(打撲), 염좌(捻挫) 등에 마사지 효과가 있다.
- 고도의 동맥경화증, 임신, 심장이 나쁜 사람 또 아픔이 심한 사람은 이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⑦ 증기함욕(蒸氣函浴), 증기욕실욕(蒸氣浴室浴)

- 증기함욕은 상자속에 45~50℃의 증기를 발생시켜 목부터 위는 밖으로 내고 몸은 상자(箱)속에 앉아서 이용하는 것으로 심장에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발한(發汗)작용을 촉진시키고, 신진대사를 하게함으로써 신경통, 류우머티즘, 비만, 피로회복에 효과가 있다.
- 증기욕실욕은 고온의 증기가 충전된 넓은 공간에 앉아서 증기함욕의 효과와 더불어 온천수증기를 마시면서 이용케 함으로써 증기함욕의 효과 외에 기관지 천식, 객담(咯痰)에 의한 폐색(閉塞)의 고도증례, 비폐색(鼻閉塞) 등의 병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고혈압, 심장이 좋지 않은 사람의 이용은 좋지 않다.



⑧ 보행욕(步行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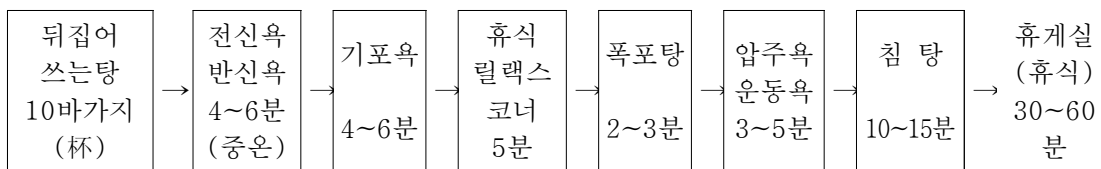
- 온천수의 온도를 40℃ 정도의 탕조(湯槽)와 20℃ 정도의 수조(水槽)를 구분설치하여 바닥에 자갈을 깔아 그 속을 교대로 걸어 다니게 함으로서 발바닥의 자극효과와 같이 온냉 자극효과를 부여함으로써 정신적 피로회복과 자율신경실조증에 좋고 몸이 냉한 사람의 단련(鍛鍊)에도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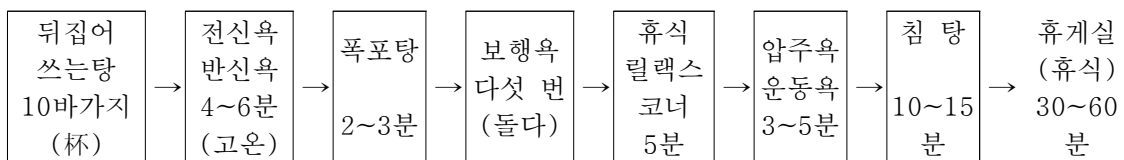
다. 보양온천의 입욕프로그램

- 이 프로그램은 일본 건강개발재단에서 제시한 기준으로서 현재도 온천 전문의(專門醫)들이 각종 병례(病例)를 모아 다시 검토를 하고 있으며 이 입욕프로그램은 각 욕조에 대하여 운동생리학적인 실험을 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 실험항목은 심박수(心拍數), 체온(體溫: 피부온을 각 부분에서 측정) 혈압, 산소섭취량(酸素攝取量) 주체적 온도감각 등이며 이러한 데이터에 의거 작성한 것이고 신체의 중요 기능의 운동을 도우며 병치료와 피로를 없애고 심신을 다같이 상쾌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온천 입욕기준인 것이며 일본의 구와하우스의 입욕설비가 배치되어 있는 바드존(BATH ZONE) 안에 게시 입욕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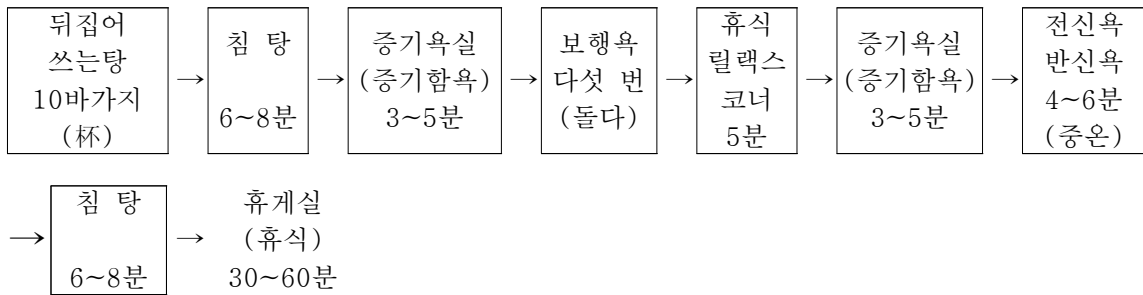
① 일반 건강한 자의 입욕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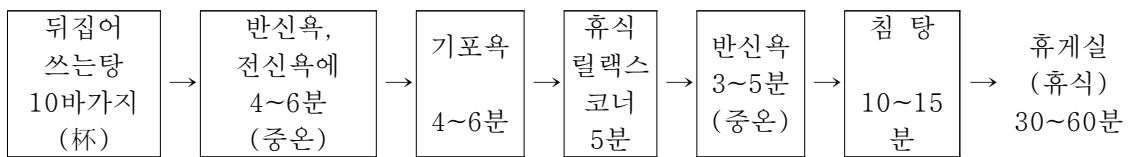
② 요통(腰痛), 어깨근육이 빠근할 때의 근육피로 해소입욕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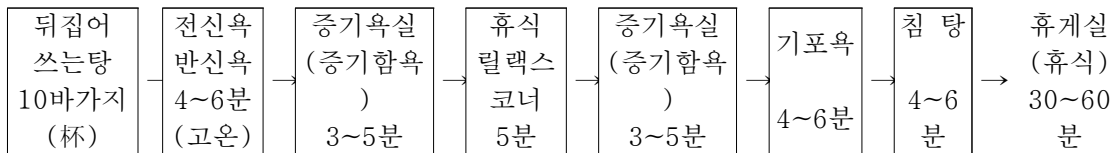
③ 스트레스 해소 입욕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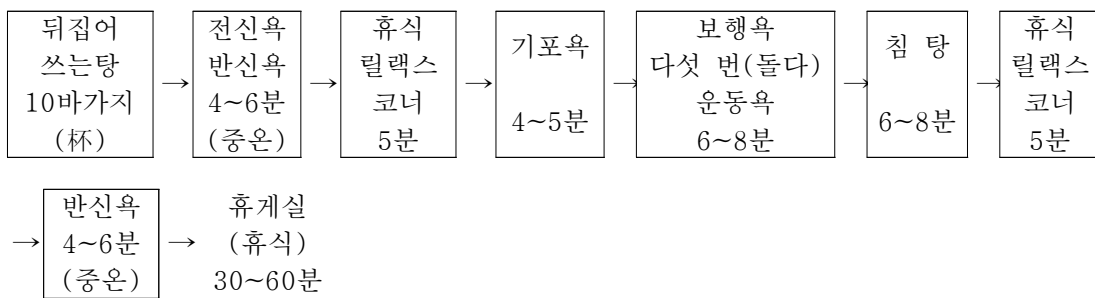
④ 고혈압, 동맥경화 징후자의 입욕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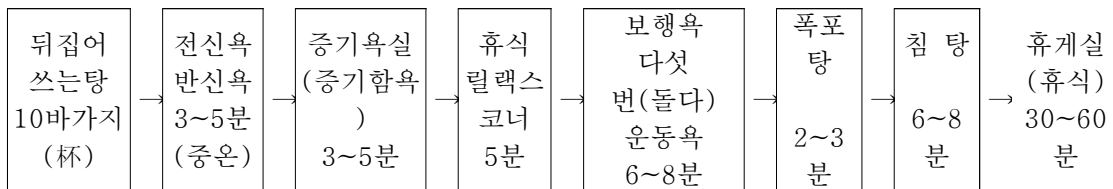
⑤ 미용(美容) 목적의 입욕법



⑥ 일상 기계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 등의 입욕법



⑦ 중년, 노인(실버)의 건강만들기 입욕법



5. 향후 온천운영의 내실화 방안

가. 온천산업의 활성화

■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통한 온천산업 활성화 계기 마련

- 2007년 이후 매년 정례적 개최로 범 국민적 온천이용“붐” 조성
- 온천요금할인, 온천체험, 가요제, 온천발전세미나 개최 및 지역축제와 연계,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울진	속초	동래	충주	부곡	유성	아산	예산

※ 2015년(제9회)에는 울진군에서 개최(10월 예정)

■ 보양온천 제도의 조기정착

- 온도·성분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온천에 대해 보양온천 지정
-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온천치료의 의학적 효과를 규명

< 보양온천 지정기준 >

- 온천수 기준 : 온도 35℃이상 또는 탄산천·유황천·총고용물 함유
 - ※ 전국 온천 449개 지구중 125개 지구 해당(27.8%) ('13. 12월 기준)
- 내부시설 기준 : 응급조치실·운동욕장 등 온천을 통한 치료·요양이 가능한 시설
- 주변환경 기준 : 공기청정도, 소음도, 경관 등
- 정책적 기준 :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정도

- 지정기준 개선 - 기존 시설기준 외에 지구 또는 구역단위 지정기준 마련
 - 현재 보양온천 지정기준은 온천수(온도, 성분, 수량), 보양온천시설(건강시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보양온천 환경 기준(필수사항, 권장사항) 등 3가지임
 - 보양온천 지정 : 설악위터피아(속초), 파라다이스스파도고(아산), 덕구(울진), 덕산스파캐슬(예산), 동해보양온천컨벤션호텔(동해), 중원(충주), 비오매드(화순), 삼매봉(제주)

■ 온천 건강보험제도 도입

- 저렴한 비용으로 보양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도입
 - ※ 프랑스(약물사용비 3~40%감소), 일본(온천요양시 의료비 공제)
- 도입방안 공론화를 위한 세미나, 공청회, 설명회 개최 추진
- 온천수로 보험적용 가능한 항목(수치료)에 시범적 적용추진
- 온천전문의 제도도입 검토

■ 온천수 음용화 제도 도입

- 지하수의 음용기준은 먹는물관리법령에 근거, 온천수는 특성상 다양한 성분으로 인해 음용화는 곤란
 - 온천수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은 없으나 광물성분이 함유되어 먹는물 기준중 심미적 기준(색도, 탁도, 경도 등)에 불부합
 - ※ 광물질이 함유된 해양심층수는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정('07.8)으로 별도 수질기준 마련
- 온천수 치료효과 검증후 건강 치료용으로 제한적 음용(환경부)
- 먹는물 기준을 충족하되 심미적 기준 배제 방안 먹는물관리법 개정 또는 별도의 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해외사례

- 프랑스 에비앙(EVIAN)수
 - 탄산화합물·칼슘·마그네슘 등 함유, 신장병과 비뇨기 질환에 효능이 있고 일정량 음용시 이뇨효과
- 벨기에 스파(SPA)
 - 광천을 의미, 성분은 함철 탄산 냉천으로 국가가 관리
- 일본 아리마(有馬)
 - 낮은 온도 탄산천, 위장병에 좋고 천연탄산수로 사이다 제조

■ 온천수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수익 창출

- 고온의 온천수 열에너지를 이용한 난방시스템 설치 보급
 - 고온 온천수 자원은 신재생에너지(지열에너지) 설치비 지원방안 강구
 - 에너지효율 장려금 적용 추진
- 부곡온천 및 동래온천 등 계획예정

■ 온천수 이용 화장품, 비누, 의약품 등 개발

- 전북 순창군 - 나노버블(온천수 혼합음료) 생산·시판 중
- 충남 아산시 - 화장품, 미스트, 마스크 팩, 입욕제 등 온천수 시제품 개발·판매
- 강릉시 금진온천 - 메이스초이스(스킨, 로션, 미스트, 샴푸, 비누 등 화장품), 미네랄 워터(수출)

■ 온천도시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온천수음용 및 관리도모

- 온천도시 육성 방안 및 대상지 지정·선정 기준 마련
 - ※ 안전행정부에서 온천도시 지정기준 마련을 위한 온천법시행령 개정 추진 중

■ 온천산업에 대한 세제부담 완화

- 조세부담 : 관광단지 수준으로 완화
 - 취득세·등록세·농지개발부담금 50% 감면, 전기료, 하수도세 인하, 지역개발세 경감

■ 해외 우수온천 벤치마킹 실시

- 온천상품이 활성화 되어있는 가까운 일본 등 온천 우수선진국에 대하여 안전행정부 자체 또는 협회 지자체 등과 연계한 벤치마킹 추진

■ 신규 과제의 지속적인 발굴

- 온천산업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하고 온천서비스 및 시설 수준 향상을 위한 발전과제를 발굴 육성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
- 온천업무 추진관련 관계부처에서 수용되지 않는 과제에 대하여는 대응 논리를 개발하여 지속적인 협의

나. 온천시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역할 정립

■ 온천협회의 역할

- 온천시설에 관한 자료 구축 등 전문성 강화
 - 관측시스템의 조기 설치 등 온천에 관한 정보구축을 바탕으로 전국의 온천시설과 지속적인 네트워크 강화 및 네트워크 중심축 역할 수행
 - 전국 온천시설의 정보제공 및 영세한 온천시설에 대한 자문역할 수행
- 서비스 매뉴얼 개발 및 지속적 업그레이드
 - 온천시설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 변화하는 고객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
 - 시설, 계절별 특성을 살린 융통성 있는 서비스매뉴얼 지침 개발·배포 필요
- 온천종사자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다양화
 - 온천에서의 서비스 중요성, 온천종사자 및 온천이용시설 종업원의 역할과 태도 등을 포함
 - 기본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선진국 사례 소개 등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 온천종사자의 역할

- 정기적 평가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서비스 개선
 - 고객의견 카드 작성, 고객 만족도 조사 등 고객이 온천시설 방문을 통해 어떤 기대를 갖게 되었는지 파악
 - 고객의 공통적·개별적 요구를 구별함으로써 다양한 고객특성 파악을 통한 서비스 개선
- 현실적인 목표설정과 고객서비스 개선 전략 수립
 - 온천시설별 서비스 역량과 방문고객 특성 등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온천시설과 차별화된 전략 수립 필요
 - 고객이 기대하는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감동을 유도하고 직원들이 그 의미를 공유하여 즐겁게 실천하도록 유도
 - 업데이트된 온천시설 정보 제공 등으로 고객들의 재방문 유도
- 직원 우대를 통한 고객 서비스 인프라 구축
 - 직원들을 존중하는 문화와 업무환경 조성 등으로 직원감동을 통한 고객 서비스 문화 정착 유도
 - 친절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직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게공간 마련 등 근무 만족도 향상
 - 서비스 중요성과 그 서비스를 지원하는 직원의 역할을 고려할 때 서비스 정신을 갖춘 직원들의 다량 선발 확충

6. 행정사항

가. 온천종사자 교육제도

■ 관련 법령·규정

- 온천법 제26조(온천종사자 교육)
 - ① 온천종사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온천종사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교육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온천종사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포함시켜야 하며, 교육실시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전의 위생교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온천법 시행령 제19조(온천종사자 교육)
 -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연간 4시간으로 하며, 그 밖에 교육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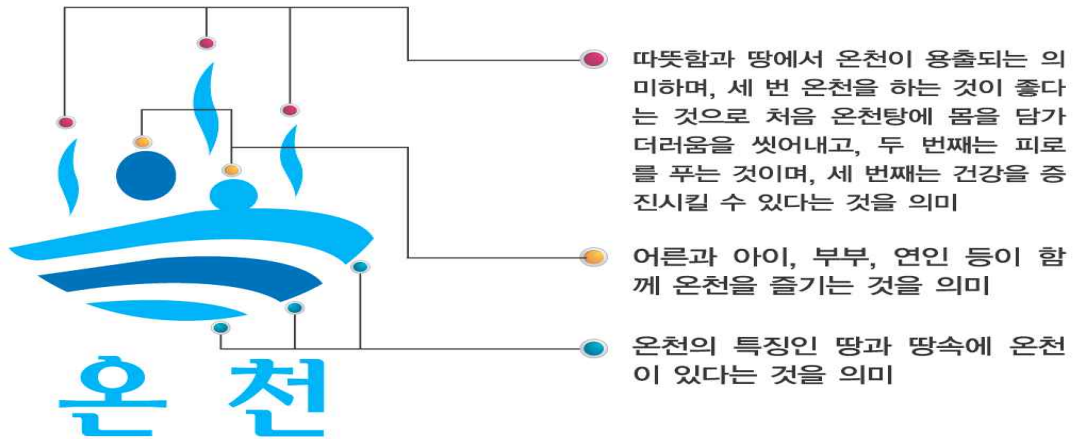
구분	계	온천법	온천운영	공중위생관리
시간	4시간	2시간	1시간	1시간

- 안행부고시 제2010-71호(‘10.10.29)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제14조(행정지원)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할지역에서 온천종사자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강사 등과 관련하여 협회장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최대한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 교육대상 및 교육불참자 조치

- 교육대상 : 온천중사자(법 제2조제3호)
 -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
 - ※ '관광진흥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관광숙박업 시설 또는 유원시설업, 골프장, 스키장 및 수영시설이나 공동급수대상자도 해당
- 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37조 제1항제3호)
 - ※ 과태료는 시장·군수가 부과·징수

나. 새 온천로고의 부분별 의미



다. 회원가입 안내

■ 협회운영

- 우리 협회는 온천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 유지관리 및 온천종사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온천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온천전문검사의 위탁시행, 특별회원인 자치단체와 온천사업자인 일반 회원의 회비 수입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모든 온천사업자가 본 협회의 회원가입 대상이므로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신 온천사업자는 회원가입을 요청드립니다.

■ 회원특전

- 회비를 납부하신 회원에게는 매년 시행하는 온천종사자교육의 교육비를 면제하고, 온천종사자가 온천의 개발·이용 및 관리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각종 민원에 대해 회원사 입장에서 해결·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
- 당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사 소개와 향후 회원사 홈페이지 개설 지원(무료) 등으로 해당 온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한국관광공사, 언론기관 등 각급 유관기관·단체의 매체를 통하여도 온천사를 소개함
- 협회가 온천업계의 이익을 강력하게 대변함으로써 모든 온천사업자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

우)110-071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3-1, 301호(당주동, 영진빌딩) 전화 02)720-5004 /전송 02)723-5003

회원가입 신청서			
사업체명			
대표자 성명			
주 소			
대표전화		팩스	
담당자 성명		담당자 핸드폰	
이메일			
<p style="text-align: center;">본업체는 귀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오며 회원으로서 정관 제11조에 규정한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년 월 일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회사(단체)명 : _____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대표자명 : _____ (인) </p>			

※ 상기 회원 가입신청서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우편 또는 팩스

구분	연회비(원)	비 고	비고
일반회원	360,000	분할납부 가능(일시불, 분기별 등)	가입비 없음

※ 지로용지는 전화요청시에도 보내드립니다.

무통장입금계좌 : 농협 003-01-210524,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

라. 온천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지원(무료) 안내

■ 홈페이지란?

-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 인터넷이라고도 함)에서 볼 수 있게 만든 컴퓨터 문서의 일종인 하이퍼 텍스트를 지칭함. 문자, 사진, 동영상 등의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에 빠르게 전달 가능함.
- 인터넷이 발달된 한국은 전화와 마찬가지로 기본이 되는 홍보와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며, 대부분의 기업이나 사업장에서 활용하고 있음.

■ 홈페이지의 기능

- 저비용이면서 높은 홍보 효과
 - 홈페이지는 컴퓨터 문서의 일종이기 때문에, 인쇄비용이 필요 없음.
 - 전세계에서 언제나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음.
 - 네이버(Naver)나 다음(Daum)과 같은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온천을 홍보할 수 있음.
 - 카카오톡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홈페이지 주소를 전달할 수 있어 저비용으로 홍보 가능.
- 고객과의 의사소통
 -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예약이나 문의를 접수 가능.
 - 동영상이나 이미지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설명 가능.
 - 전자지도 등을 첨부할 수 있어 편리한 오는 길 설명 가능.

■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 방법


- 각종 검색 사이트에 업체를 등록 시 홈페이지 주소 입력.
 - 네이버 : <https://submit.naver.com/> 접속 후 정보 입력(무료)
 - 다음 : <https://register.search.daum.net/index.daum> 접속 후 정보입력(무료)
- 블로그/페이스북을 통해 홈페이지 주소 홍보(무료)

■ 온천 협회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표준 홈페이지

- 온천협회에서 회원사에게 무료로 홈페이지 제작을 지원함.
- 홈페이지 주소 형식 [http://\[온천아이디\].hotspring.or.kr/](http://[온천아이디].hotspring.or.kr/) 제공
-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제작 신청서 작성
 - 온천 사진과 신청서를 협회 이메일로 송부 : hot_spring@naver.com
 - 일주일 이내에 제작 완료되고, 오류 수정

■ 표준 홈페이지(예)

메뉴	모바일버전	PC버전
<p>인트로 : 홈페이지 첫화면으로 온천의 전반적인 내용을 표시함.</p>		
<p>온천소개: 온천의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설명</p>		

메뉴	모바일버전	PC버전
<p>시설안내: 온천의 시설에 대해 자세 히 설명</p>		
<p>약도: 전자지도와 연동한 오시 는 길 설명</p>		
<p>예약/문의: 홈페이지 관리자 이메일 로 예약이나 문의 사항을 접수받을 수 있음</p>		

■ 홈페이지 추가 기능 (유료)

○ 추가기능

- 사업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별도의 기능을 구성할 수 있음
- 협회 또는 다음 홈페이지 제작사에 연락

※ (주)SB인터랙티브, 1577-0770, www.sbinteractive.co.kr

○ 추가기능 항목(예)

추가 기능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관리 기능 및 게시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가입 및 관리 기능 - 게시판 3개까지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자메세지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약 혹은 문의 접수 시 관리자 휴대전화로 전송 가능 - 회원 대상 대량 문자 발송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도메인 등록 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뉴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주변 먹거리 안내 등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약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장 별 상황에 맞게 설계 필요

회원사 홈페이지 개설지원 (무료) 양식
<p>○ 파일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함.</p> <p style="padding-left: 20px;">※ 홈페이지(hotspring.or.kr) : 상단 메뉴- 커뮤니티 - 공지사항</p> <p>○ 아래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협회에 이메일로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소전경, 주변의 주요 볼거리, 먹거리 등에 대한 다양한 자료 포함(사진파일 5매 이상) - 이메일 파일 제목은 온천업소명과 지역 시·도 명칭을 기입함. (예) 호텔덕구온천(경북) <p>※ 이메일 주소 : hot_spring@naver.com</p>

1. 업무담당자 (업무연락용이며, 홈페이지에 소개되는 것은 아님)

구 분	내 용	내 용
업무담당자	총무과장	000
업무담당자 전화		핸드폰
업무담당자 이메일		

2. 홈페이지 소개내용

구 분	내 용	내 용
온천업소명		
소재지		
이용요금		
전화		
온천수의 특징	온도	
	주요성분 및 효능	
	기타	

구 분		내 용
온천 시설 규모	총 면 적	
	주요시설	
	주차대수	
주변 관광지 및 사진첨부		사진은 별도 첨부 이메일로 원본파일 송부
주변 먹거리 및 사진첨부		사진은 별도 첨부 이메일로 원본파일 송부
교통안내	승용차	
	대중교통	
기타(특별하게 소개할사항)		

3. 주요 사진: 이메일로 원본파일 송부 (hot_spring@naver.com)

건물 외부사진(주간)	1층 로비
내부	

Ⅲ. **공중위생관리**

III. 공중위생관리

1. 총론

가.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비전 : 공중위생 서비스 선진화 및 국민만족도 향상**

■ **목표**

- 공중위생영업의 위생수준 향상 및 경쟁력 제고로 미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 **추진전략**

- 사전지원적 규제합리화 ,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 고용 및 산업 연관 효과 극대화
-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개요**

-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개혁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기존의 공중위생법을 폐지하고 법률 제5839호(1999.2.8)로 공중위생관리법을 제정
- 그 주요내용은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제를 개설통보제로 바꾸어 제도개선을 통한 규제완화를 실시하고, 행정공무원의 영업소 출입을 제한하며, 휴일제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을 폐지하여 영업자와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 그러나 시행결과 공중위생영업소에서의 각종 무질서와 음란행위가 증가하고 공중위생분야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개설 통보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제도를 신설하는 등 양질의 공중위생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차례 개정됨

나. 2015년도 공중위생관리업무 추진방향

■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실시

- 추진목적
 -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를 통해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적향상 도모 및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공표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주기),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 평가대상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
- 지자체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사업 관리

년도	평가실시	비고
2012	목욕업, 숙박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2013	이용업, 미용업(일반, 피부, 종합)	
2014	목욕업, 숙박업, 세탁업	
2015	이용업, 미용업(일반, 피부, 손톱·발톱, 종합)	

■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 업무처리 관련 요청

- 폐업신고 시 영업신고증 등 요구관행 폐지
- 추진배경 : 폐업신고 간소화를 통한 영업자 불편 해소
- (배경) '08.06.15.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폐업신고 시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신고증 분실사유서” 제출의무를 폐지하였음에도 시·군·구청에서는 여전히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불편 초래
-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 시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신고증 분실사유서” 제출을 요구하지 말 것
-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 구비서류에 영업신고증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삭제

다. 최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사항 공시

■ 2014. 7.1 개정사항

- 목욕장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강화(안 별표 1 II의 제2호다목)
- 목욕업소 내 성매매 알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한실을 밀실로 구획할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편의시설 및 휴식실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목욕업소 내에 편의시설 및 휴식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편의시설 및 휴식실의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고, 밀실 형태로 구획할 수 없도록 함.
- 목욕장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성매매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014.9.1.개정사항

- 목욕업소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목욕장영업의 신고 시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숙박·목욕업소 내 먹는 물 수질기준을 「먹는물관리법」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라. 공중위생관계법령의 변천내역

- 영업의 종류(법 제2조)
 - 위생접객업 : 숙박업, 목욕장업, 유기장업, 당구장업, 수영장업
- 영업의 세분(시행규칙 제3조)
 - 숙박업 : 호텔업, 콘도미니엄업, 여관업, 여인숙업
 - 목욕업
 - 일반목욕장업(공동탕업, 가족탕업, 한증막업)
 - 특수목욕장업(사우나탕, 터키탕<증기탕>, 복합목욕탕)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 위반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11조)(1999.2.8.)
- 영업소에 대한 출입·검사 및 위생교육 정례화(2002.8.26)
 - 명예공중위생감시원제 및 과징금제도 신설화
 - 시·도지사로 하여금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2004.1.29)
 - 찜질시설서비스 영업의 목욕장업 편입(2005.3.31)
 - 공중위생 책임자 지정을 통한 위생교육 실시(2006.9.27)
 - 공중위생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전문기관이 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2008.3.28)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2011.3.30.)

마. 불합리한 제도개선 추진

- 손씻기 생활화 교육·홍보 신설 (제1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손씻기 생활화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공중위생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비스 제공 전·후로 손을 청결히 하도록 함
- 위생관리기준 준수 의무와 영업자 위생교육 및 위생서비스평가의 연계 실시로 법령의 실효성 제고 (제15조 및 16조)
 - 위생관리 의무사항을 위생교육 내용 및 위생서비스평가의 필수 항목으로 규정하고, 위생관리의무 및 교육이수 의무위반자에게는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부과함
- 처벌 규정 개선 (제21조, 제45조)
 - 경미한 위생관리의무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폐지하되, 성매매 알선 행위 등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함.
- 과세정보 제공 요청 근거 마련 (제31조제3항)

-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의 장에게 납세자의 인적사항 및 과세정보에 관한 자료를 문서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공중위생영업 정의

■ 숙박업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예)호텔, 모텔, 여관, 여인숙 등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숙박업의 세분)
 - 숙박업(일반)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 제외)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숙박업(생활)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 포함)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숙박업 제외 대상시설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 목욕장업

- 손님이 물로 목욕을 하거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예) 공동목욕탕, 한증막, 사우나, 찜질방 등
- 목욕장업의 제외 대상시설
 -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관리실
 - 숙박업 제외 대상시설에 부설된 욕실

2. 공중위생영업 신고

가. 영업의 신고

■ 신고의 의미

-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영업의 신고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영업에 필요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고 관청에서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구비서류, 기타 법령 등에서 규정된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즉시 신고 수리함.(미신고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영업신고의 대상 :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 영업의 신고절차

- 신고관청 : 영업소 소재지 관할시·군·구
- 첨부서류 : 영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영업시설 및 설비 개요서(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교육필증(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 공무원 확인사항

-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 영업의 신고수리 : 즉시

- 업종별 시설 및 설비기준 확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영업신고증 교부한 후 15일 이내)
- 업종별 시설 및 설비 기준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나. 변경신고

- 신고대상 변경사항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신고한 영업장면적의 3분의 1이상 증감,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 한함)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숙박업·미용업의 세부 업종간의 변경
- ※ 변경신고한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 등을 변경신고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 확인
- 제출서류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시행규칙 제5호서식), 영업신고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
- 변경신고 처리 : 즉시
 - ※ 신고증 교부 : 기존 신고증을 고쳐 쓰거나 재교부

다. 지위승계신고

- 지위승계신고 대상 : 승계후 1개월 이내
 - 영업 양도시 양수인, 영업자 사망시 상속인
 - 공중위생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시 제출서류
 -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라. 폐업신고

- 신고기간 :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
- 제출서류 : 영업폐업신고서(시행규칙 제5호의2서식)

3. 공중위생업소 관리

가. 공중위생관리 대상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적용대상
 - 공중위생영업(6종)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 공중이용시설(6종.) : 업무시설, 복합건축물, 공연장, 학원, 혼인예식장, 실내체육시설

나. 연도별 공중위생영업소 현황

(단위 : 개소, 2014.12.31 기준)

구분 년도	총 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세척제제조업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2010	199,333	30,867	8,446	21,739	95,194	32,262	9,656	455	287	427
2011	202,365	30,651	8,252	20,835	99,136	31,683	10,623	442	303	440
2012	205,825	30,573	8,033	20,219	103,670	30,949	11,178	418	320	465
2013	209,376	30,640	7,818	19,678	107,761	30,286	11,986	399	331	477
2014	215,062	30,746	7,649	19,239	113,869	29,512	12,821	387	347	492

다. 보고 및 출입·검사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

- 권 한 자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시 기 :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 대해 필요한 보고요청
- 소속 공무원은 영업소·사무소, 공중이용시설 등에 출입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이행 및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검사 및 공중위생영업장부나 서류 열람 가능
- 상기 업무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소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함.

라. 공중위생감시원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

■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

- 공중위생영업 신고관련 시설 및 설비의 확인
- 공중위생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상태 확인·검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
-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상태의 확인·검사
-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이행여부의 확인
-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이행여부의 확인
-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 이행여부의 확인

■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화학, 화공학, 환경공학 또는 위생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외국에서 위생사 환경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
- 3년 이상 공중위생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공중위생감시원의 인력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중위생행정에 종사하는 자 중 공중위생감시에 관한 교육훈련을 2주 이상 받은 자(공중위생행정 종사기간 동안에 한함)
- 공중위생감시원의 임명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 소속공무원 중 해당자격을 갖춘 자를 임명

마. 공중위생영업소 지도점검

■ 지도단속업무의 고유사무 권한 및 임무

- 시·군·구 : 공중위생영업소의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무신고 영업소에 대한 확인
- 경찰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성매매행위알선등행위 처벌에관한 법률」, 「의료법」(안마사에관한규칙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 위생감시 준비사항

- 점검표 및 확인서, 카메라 및 통신장비
- 공중위생관리법령집 및 관련 규정집, 공중위생감시원증
- 검체수거에 따른 수거증 및 수거에 따른 준비물 등

■ 위생감시 대상 및 중점 점검내용

- 공통사항 : 업종별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 숙박업 : 숙박업소 청결 등
- 목욕업 : 밀실설치, 탈의실내 불법 감시카메라 설치 등 확인

마.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제15조의2, 영 제9조의2)

■ 업무범위 및 임기

- 공중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대상물의 수거 지원
-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제공, 업종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계몽
- 명예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다만, 소속 단체장 등의 요청에 의하여 위촉권자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함.

■ 명예감시원 운영

-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시·도지사는 활동지역을 지정하여 시·군·구별로 명예감시원을 배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활동지역과 시군구별 배정인원을 변경 조정할 수 있다.

4. 과징금 및 과태료처분, 벌칙규정

가. 과징금 (법 제11조의2)

■ 과징금 정의 및 부가·귀속

-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당해 위반사항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갈음하여 금전을 부담하게 하는 행정 제재금
-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고 당해 시·군·구에 귀속

■ 과징금의 산정기준 (시행령 별표1)

- 영업정지 1월은 30일 기준
-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전년도 의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함

나. 과태료처분 (법 제22조)

■ 과태료

-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 위반행위(행정질서벌)에 대한 제재로서 일종의 금전벌
- 행정형벌은 행정목적에 직접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인데 반해 행정질서벌은 신고의무 등을 게을리한 것과 같이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에 장애를 미칠 위험성이 있는 행위 즉, 행정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 과태료 부과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다. 벌 칙 규 정(법 제20조 및 제21조)

■ 벌 칙

- 벌칙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지권에 의거 과하는 제재로서 행정청에서 사법당국에 고발 등에 의거 조치됨

■ 대상 및 형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신고영업(법 제3조 제1항)
 - 영업정지명령·일부시설의 사용중지명령·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시설을 사용하거나 영업한 자(법 제11조 제1항)
-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3조 제1항 후단규정)
 -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제3조의2)
 - 건전영업질서유지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법제4조 제7항)
- 3백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생관리기준 또는 오염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로서 법 제10조의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자 또는 면허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행한 자

■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

[별지제2-1, 2호서식]

공중위생업종별 영업자 준수사항

☞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동업 시행규칙 제7조

(숙박업)

준 수 사 항 (시행규칙 제7조관련, 개정 2012.12.11)

- 영업신고여부
- 영업변경신고여부

가. 객실·침구 등의 청결

- (1) 객실·접객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소독 횟수

호텔 및 여관(객실수 20실 이상)은 4월부터 9월까지는 1회이상/1월, 10월부터 3월까지는 1회이상/2월 소독하여야 한다.

- (2) 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하며, 수시로 일광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건조시켜야 한다.
- (3) 객실의 먹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이어야 하고, 깨끗한 용기에 담아 비치하여야 한다.

나. 욕실 등의 위생관리

욕조수는 별표 2의 1. 수질기준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환기 및 조명

- (1)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기계환기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가동시켜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객실·접객대 및 로비시설의 조명도는 75룩스(Lux)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의 조명도는 20룩스(복도 및 계단의 경우 심야에서 10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라. 그 밖의 준수사항

- (1) 숙박업자는 업소내에 숙박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 (2) 숙박업(생활)의 취사시설은 「도시가스 사업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목욕업)

준 수 사 항 (시행규칙 제7조관련, 개정 2012.12.11)

- 영업신고여부
- 영업변경신고여부

가. 목욕실 등의 청결

- (1) 목욕실은 해충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매일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 (2) 탈의실·옷장·목욕실·발한실·물통·깔판·휴게실·휴식실·현관 및 화장실 등은 매일 1회 이상, 배수시설 및 오수조는 수시로 청소하여야 한다.
- (3) 수건·가운 및 대여복을 손님에게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세탁한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 (4) 이용기구 또는 미용기구를 비치할 경우에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 (5) 부대설비로 좌욕기 및 훈증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손님 1인이 사용할 때마다 반드시 소독하여야 한다.
- (6) 욕수는 별표 2의 1. 욕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발한실 등의 안전관리

발한실 안에는 온도계를 비치하고, 발한실 안과 밖에 이용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문을 붙여야 한다.

다. 조명 및 환기

- (1) 발한실·휴게실·탈의실·접객대·복도·계단·현관 및 화장실 그 밖에 입욕자가 직접 이용하는 장소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2) 휴식실·목욕실 및 세면시설의 조명도는 40룩스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목욕실·편의시설·휴게실 및 휴식실 등에는 실내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용량에 맞는 환풍시설 및 정화시설을 설치하거나 환기용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그 밖의 준수사항

- (1) 다음에 해당되는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 (가) 감염병환자로 인정되는 자(온천수 또는 해수를 사용하는 목욕장으로서 환자의 요양을 위한 입욕시설에서 입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 (다)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준 수 사 항 (시행규칙 제7조관련, 개정 2012.12.11)

- (2) 목욕실 및 탈의실은 만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아니된다.
- (3) 목욕실·탈의실·및 발한실에 종사하는 자는 남자목욕장의 경우에는 남자, 여자 목욕장의 경우에는 여자에 한하여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목욕실·탈의실 및 발한실에 이성의 입욕보조행위를 하는 자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 (5) 영업소 안에 목욕업신고증, 접객대에 목욕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 (6) 발한실 입구에 아래 해당자에 대한 입욕 주의문을 붙여 게시하여야 한다.
 - (가) 감기에 걸렸거나 만 5세 미만 또는 전신 쇠약 증세 어린이
 - (나) 수축기 혈압이 180mmHg 이상인 자
 - (다) 백내장이 우려되거나 안면홍조증 환자인 자
 - (라) 노약자·임산부·고열환자 및 중증심장병 환자
 - (마) 술을 마신 후 2시간 이내의 자
 - (바) 출혈을 많이 한 자
- (7) 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의 영업자가 남녀 공용 발한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한복을 착용한 뒤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8) 숙박에 이용되는 침구류 등을 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용자의 일시적 수면이나 휴식을 위한 대형타월 및 베개 등은 비치할 수 있다.
- (9) 목욕장 안의 먹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이어야 한다.
- (10) 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00시부터 05:00시까지 청소년(「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동행하거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1) (10) 단서에 따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소년의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 (나) 출입사유 및 출입허용 일시 (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전화·청소년과의 관계) 및 서명 (라)영업자의 확인여부
- (12) 영업소의 표시는 신고된 명칭(상호) 및 영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업종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업 종	<p style="text-align: center;">시설 및 설비 기준</p> <p style="text-align: center;">(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관련, 개정 2012.12.11)</p>
숙 박 업	<p>가.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p> <p>나.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p>
목 업	<p>가. 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 다만, 법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한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 제2조제 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 에는 목욕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나. 발한실 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 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 다. 발한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고, 밀실 형태로 구획하여서 는 아니 된다.</p> <p>라.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p> <p>마. 목욕실·발한실·탈의실·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에 한한다)은 각각 별도로 구획</p> <p>바.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소독 장치 또는 오존장치를 설치</p> <p>사.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 할 수 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여 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p>

2014년도 온천종사자교육

인쇄일 : 2014년 4월

발행일 : 2014년 4월

발행처 : 행정자치부,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3-1, 301호(당주동, 영진빌딩)

☎ 02-720-5004 전송 02-723-5003

인쇄처 :
